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2014. 12. 10 (수요일), 14:00 ~ 19:10

■ 장 소: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김정배, 고혜령, 김권구, 김원, 노중국,

박소현, 이상해, 임세권,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F 21 /						
[심	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개축 공사					
3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주변 업무시설 증축					
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문서보관 창고 증축					
5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주변 숙박시설 신축					
6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내외 조형물 설치					
7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 지하수 개발					
8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 주차장 조성(허가사항 변경 허가)					
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단독주택 신축					
10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내외 남산 가는길					
10	조성 공사					
11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내 단독주택 신축					
12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내 선사체험장 증축공사					
13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 벌채					
14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옥탑 신설					
15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녕릉 주변 종중묘지 설치 부지조성					
16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 지하수 관정개발 및 관로 매설					
17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내 승가대학 도서관 신축					
18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주변 고령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19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내 어린이대피소 설치					
20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1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2	사적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23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24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허가사항 변경허가)	
25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내 강화공설운동장 및 문예회관	
	진입로 포장	
26	사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주변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27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도로 개설	
28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29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30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야영장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31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주변 유아숲 체험원 조성	
32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증축	
33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내외 초지리 안방죽 배수갑문 확장	
	공사	
34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내 홍보관 리모델링	
	및 진입로 정비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35	조정	
36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37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38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39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	
39	기준 조정	
【검」	토사항】	
40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41	사적 제121호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안) 검토	
42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태릉사격장 사용 연장허가	
42	검토	
43	사적 제463호 선농단 제례공간 정비방안 검토	
44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5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46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협의 요청(2차) 검토	

【보	【보고사항】					
47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발굴조사 계획 보고					
48	사적 제125호 종묘 내 외대문 보수 및 경관 개선사항 보고					
49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재선충 긴급방제사업 시행 보고					
50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 보고					
51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0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5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13-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19필지 1,898㎡를 추가 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14.10.8.)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 지정 예고일 : 2014.10.24.(문화재청 공고 제2014-294호)
-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ㅇ 기존지정 면적 : 1,151필지 354,794.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19필지 1,898㎡
 - 추가지정 후 면적 : 1,151필지 356,692.6㎡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4.09.24)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લ્યું મો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건 뛴	오세시	/ 시킨 	시축	인색 (m²)	(m²)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80-2	대	66	66			
	풍납동							
2	"	126-19	대	205	205			
3	"	126-36	대	13	13			
4	"	126-26	대	129	129			
5	<i>"</i>	126-104	대	102	102			
6	"	126-43	대	13	13			
7	"	126-29	대	86	86			
8	"	152-41	대	112	112			
9	"	227-21	도로	45	45			
10	"	131-81	대	102	102			
11	"	144-17	대	112	112			
12	"	279-37	대	133	133			
13	"	231-43	대	172	172			
14	"	89-7	대	99	99			
15	"	89-34	대	66	66			
16	"	231-11	대	122	122			
17	"	129-16	대	112	112			
18	"	88-17	대	93	93			
19	"	123-24	대	116	116			
Ö	합계			1,898	1,898			

※ Ⅱ-2 1필지, Ⅱ-3권역 8필지, Ⅲ권역 10필지

2.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개축 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증·개축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 고양시 소재 고양 서오릉 문화재구역과 연접한 2구역에 기존 근린생활 시설 음식점을 증·개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건은 제11차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4.10.8)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훼손 우려"로 부결 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노ㅇㅇ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 (3) 신청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증·개축 공사>
 - 이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09번지 등 2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 /2구역 : 평지붕(1층 이하, 5m이하), 경사지붕(1층 이하, 7.5m이하))
 -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	1차 신청내용 ('14.10.08) 부결	금차	비고
	지번	432-309	432-309, 432-103	432-309, 432-103	증 1필지
	대지면적	330 m²	1,182 m²	1,182 m²	증 852m²
	동수	2동	1동	1동	감 1동
건	층수	1층	지하 1층, 지상2층	지하 1층, 지상2층	증 지하1층, 지상 1층
축	건축면적	168.8 m²	470.17 m²	$470.17\mathrm{m}^{^{2}}$	증 301.37m²
개	연면적	$165.28\mathrm{m}^2$	1,136.26 m²	$1,136.26\mathrm{m}^2$	증 970.98m²
요	최고높이	5.9m	7.5m	7.5m	증 1.6m
	건축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트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구분	기존	1차 신청내용 ('14.10.08) 부결	금차	비고
지붕구조	경사지붕 (기와지붕)	경사지붕 칼라아스팔트슁글 마감	경사지붕 한식기와(3단잇기)	지붕구조 한식기와로 변경
정화조 30인조		500인조	500인조	증 470인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12.0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고양 서오릉의 지정구역에서 인접되며, 재실 앞 도로 건너편인 2구역(1층 이하/ 평지붕(5m 이하), 경사지붕(7.5m 이하))에, 기존 1층 음식점을 철거하고 건축면적:470.17㎡, 연면적:1,136.26㎡, 높이:7.5m의 음식점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10월 사적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바 있음.
- 이후 지붕만을 한식기와로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그 단일 건축물의 면적이 크고, 건축 형태가 어울리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4.10.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신청지는 세계문화유산 서오릉 지정구역과 인접한 곳으로 명릉 재실의 앞에 위치함.
- 현재 1층 한옥형태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면적 84m²(약25평), 연면적 84m²의 건물로 현재 답(畓)을 확대하여 330m²에서 1,339m²로 확대하고 건축면적을 약470m²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1,135m²로 확대, 현 건물높이 5m를 7.5m 증축하는 사안임.
- 현재의 건축물보다 상당한 규모의 건축이 예상되며 건축의 형태도 주변 경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며 재실과 인접한 건물로 역사경관을 고려한 건축 및 경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단일 건축물로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관 훼손

3. 서울 운현궁 주변 업무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주변에 업무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운현궁 문화재구역에서 약 47m 이격된 위치에 업무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운현궁(사적 제257호)
-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 (3) 신청내용<업무시설 증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1-4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m 이격)
 - ※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5호 '경운동 민병옥가옥'으로부터 약 33m 이격
 - ㅇ 사업내용

구 분 기 존		증 축	비고
대지면적 1,061.80 m²		1,271.80 m²	210m² 증
건축면적	470.66 m²	563.76 m²	91.10㎡ 증
연 면 적	6,310.01 m²	6,858.59 m²	548.58 m²
규 모	지하 3층, 지상 10층	지하 3층, 지상 11층	지상 1층 증
	(최고높이 42.45m)	(최고높이 47.45m)	(5m 증)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주차타워	32대	높이 13.2m, 43대	11대 증
용 도	업무시설(사무소,은행)	업무시설(사무소,은행)	

-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관 훼손

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문서보관 창고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문서보관 창고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광주시청 문서보관 창고증축을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3-36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문서보관 창고증축>
 -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84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 ㅇ 내용
 - 부지면적 1,362㎡, 건축면적/연면적 616.02㎡/1,717.62㎡, 지상 3층, 최고높이 18.1m, 일반철골조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5. 서울 탑골공원 주변 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탑골공원에서 약 50m 이격된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이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 o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
- (3) 신청내용<숙박시설 신축>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5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3구역(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12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13.36 m²
 - 건축면적 : 277.76m²
 - 연 면 적 : 3,436.18m²
 - 규 모: 지하3층, 지상11층(최고높이 41.70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벽재료 : 벽돌 마감. 로이복층유리
 - 용 도 :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6.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내외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내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내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사적 제529호)
- ㅇ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외
- (3) 신청내용<프란치스코 교황 조형물 설치>
 - ㅇ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외(문화재구역 내외)
- ㅇ 사업내용

구분	규모	재질	설치방법	비고
인물좌상	1,000×800×1,500mm	청동	콘크리트 기초면 위에 작품 설치	문화재구역 내
인 물 상	1,300×1,300×2,000mm	청동	원형 기단, 콘크리트 기초면 위에 석재 마감	문화재구역 외
족 흔	500×500×20mm	청동	원형 기단, 바닥면 위에 석재 마감	문화재구역 외

- ㅇ 부결
-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관 저해
- 당해 문화재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

7. 순천 낙안읍성 주변 지하수 개발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주변 지하수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4년도 제10차 사적분과(2014.9.11.) 부결 :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해 낙안 읍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1차(2014.10.8.) 부결 : 지하수 개발이 낙안읍성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부족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2차(2014.11.12.) 부결 : 다량의 채수로 인해 낙안읍성 지하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 낙안읍성 내 지하수 사용 및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완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일원
- (3) 신청내용<지하수 개발>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성북리 198번지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 ㅇ 내용
 - 용 도 : 청소년수련시설에 사용
 - 천공심도 : 지하 700m
 - 구 경 : 200mm
 - 일일채수계획랑 : 500톤 이상
 - 보호각 설치 : 면적 3.3㎡, 높이 1m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8. 경주 원성왕릉 주변 주차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주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경주 원성왕릉 주변에 주차장 조성계획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14년 10차 사적분과 소위원회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14.11.27)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원성왕릉(사적 제26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능리 산17번지
- (3) 신청내용<주차장 조성>
 - 이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18, 724-1(문화재구역에서 약 370m 이격 /1구역)
 - ㅇ 사업내용
 - 변경내용 : 건물 20m이동, 연면적 4.05m² 증가, 조경 계획 변경, 한식 토석담장 100m 설치

구 분	허가 사항	금회 변경내용	비고
대지면적/규모	1,852㎡ /지상 1층, 1동	좌동	
높이/구조	7.058m/한식목조, 박공지붕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93.15 m²	97.20 m²	증) 4.05m²
건물이동		20m 이동	
추가사항	-	한식 담장 설치(100m)	
기타 차폐식재(교목 106그루)		차폐식재(교목 25그루)	부결(14.11.27)시 20그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19/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건은 기 허가된 사항을 문화재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하기위해 신청한 것으로 이해됨
 -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의 규모를 거의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당해문화재보다 더 이격되도록 한 것으로 경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건물주변을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담장을 설치하는 것 또한 경관적 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추가 변경사항은 당해 문화재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9.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조ㅇㅇ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등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이 위치: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 60번지(247㎡ 문화재구역) 및 배반동
 1070번지(516㎡ 2구역(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이하))
 - ㅇ 사업내용
 - 건축구조: 전통한옥(목구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건축면적 39.15㎡, 연면적 39.15㎡
 - 최고높이 : 4.725m
 - 대지면적 : 763.0 m²,
 - 차폐조경식재 :소나무 10본, 잔디식재 270m²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2.04/문화재위원 ㅇㅇㅇ)
 - 이번 단독주택 신청 대지는 도로를 면한 지역과 문화재 구역을 제외하면주택을 신축할 공간이 부족함.
 - ㅇ 문화재 구역은 이미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평탄화 되어 있음

- 주변 연접되는 지역에 건축물이 있어 일부를 사용대지도 포함시켜도 경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시굴조사는 필요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사업을 시행할 것

10.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내외 남산 가는길 조성 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내외 남산 가는 길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주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라 탐방로(남산 가는 길)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사적 제457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교동 274 외
- (3) 신청내용<남산 가는길 조성 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교동 166~168-1(문화재구역 및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사업 구간 200m
 - 황토콘크리트, 화단조성, 도로법면
 - 포장공 : 황톳길 포장(B=3.5m, l=187m)
 - 식재공 : 영산홍 405주, 산철쭉 776주, 남천 400주, 배롱나무 40주, 소나무(반송) 35주
 - 부대공 : PE관 설치 등 1식
 - 기타 구조물 설치 : 벤치, 볼라드, 안내판, 조명 등 설치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2.04/문화재위원 ㅇㅇㅇ)
- ㅇ 월정교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산 가는 길' 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ㅇ 성토의 높이는 기존지형과 어울리도록 낮추어 조성하는 것이 좋겠음
- 조경계획은 월정교 주변 조경계획과 어울리도록 하고 일관성 있도록 계획 하는 것이 좋겠음
-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소조경만 할 수 있도록 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 설계는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

11. 부여 청마산성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내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청마산성 지정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백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청마산성(사적 제34호)
-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1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12-2번지(문화재구역)
 - ㅇ 사업내용
 - 구조 : 조적조
 - 건축면적 / 연면적 : 120m² / 120m²
 - 규모 : 지상 1층, 최고높이 5m
 - 사업기간 : 2015.03 ~2017.03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2. 부여 송국리 유적 내 선사체험장 증축공사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내 선사체험장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부여 송국리 유적 내 선사체험장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제249호)
-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번지
- (3) 신청내용<선사체험장 증축>
 - 이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225-2, 225-6번지(문화재구역)
 - ㅇ 사업내용
 - 증축사항: 기존 1동은 보존. 2동은 철거 후 증축
 - 건축규모
 - · 면적 : 312.06 m²
 - · 건폐율 20.41%
 - · 용적률 20.16%
 - · 오수처리시설 6ton
 - * 기존건물(철거동 면적 82m²)
 - 체험프로그램 : 유적 발굴, 선사시대 토기제작, 화살촉 제작, 돌도끼 활용 체험 등
 - ㅇ 사업예정기간 : 2015.1월~12월
 - ㅇ 소요예산 : 502백만원(부여군비)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3.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입목벌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지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제249호)
-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번지
- (3) 신청내용<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804(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1구역)
 -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0.60ha
 - 모두베기 : 리기다(240본), 소나무(30본), 참나무류(345류)
 - 조림: 감나무, 밤나무, 편백나무 등
 - ㅇ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3개월간

- ㅇ 조건부가결
- 수종 중 소나무 일부는 잔존토록 할 것

14.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옥탑 신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기존 근린생활시설에 옥탑을 신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125호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된 곳(2구역)에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에 옥탑을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옥탑 신설>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12-2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30m 이격

/2구역: 건물최고 높이 평지붕 8m 이하(경사지붕 11m 이하))

ㅇ 사업내용

	구 분	기존시설	신청내용 ('14.12.10)	비고
	대지면적	231.59 m²	좌동	
근린생활 시설 옥탑	건축면적/연면적	161.88 m²/636.56 m²	좌동	
	대수선 면적(옥탑)	_	16.45 m²	옥탑(연면적 산정 제외)
	최고높이	12.84m	15.70m	옥탑신설 높이 2.86m

-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5. 여주 영릉과 녕릉 주변 종중묘지 설치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녕릉」 주변에 종중묘지 설치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 여주시 소재 여주 영릉과 녕릉 문화재구역에서 약 10m 이격된 1구역에 종중묘지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제10차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14.09.11)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수목 벌채 최소화 및 원지형에 맞추어 조정)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녕릉(사적 제195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 (3) 신청내용<종중묘지 설치>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83-1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 0 사업내용

위치	지번	지목	지적(m²)	사용면적(m²)	비고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83-13	റി	44.069	990	묘지설치
역구시 중시된 청대다 	~건05-15	임	44,962	100	진입로(작업)
계				1,090	

- 기타

- · 분묘 설치기수 : 28기(비석 28기), 분묘형태 : 평장
- · 성토(110m²), 절토(261m²) / 묘지 비석 및 잔디 식재 : 324m²
- · 원형존치(150m²)
- · 조경녹지(504m²) : 회양목식재(50~100cm, 150본)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2.03/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 상기 종중묘지 설치 장소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0m 이격된 1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문화재 지역으로부터 지속되어 이어지는 능선이 살아있는 지형임.
 - 향후 능원의 1구역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유사한 개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점과 사유재산권의 활용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 원지형보호지역인 1구역의 관리에 대한 원칙적 고민을 심도있게 하여 능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유지에 대한 원칙 검토 필요.
- (2) 현지조사의견('14.11.20/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해당지역은 세계문화유산(여주 영릉과 영릉)의 후면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된 곳으로 자연 능선 숲에 종중묘지 설치 신청사항임.
 - 해당지역은 송림 및 리기다소나무 등 자연능선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묘지 설치시 세종 영릉의 능역 경관에 훼손이 우려되며, 능역에서 직시되어 역사경관림 훼손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조선왕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6. 청주 상당산성 내 지하수 관정개발 및 관로 매설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내에 지하수 관정설치 및 관로를 매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내 산성마을 생활용수 부족으로 관정 개발 및 관로 매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지하수 관정개발 및 관로 매설>
 - ㅇ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5-2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 ㅇ 사업내용
 - 관정 개발 : 심도 80m, 구경 200mm
 - 관로 매설 : Ø50mm, 수로관 270m
 - 부대 시설
 - · 보호휀스 : 2×2m, 높이 1.8,m
 - · 기초 콘크리트 : 2×2m, 두께 20cm

-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사업 시행

17. 보은 법주사 내 승가대학 도서관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내에 승가대학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은 법주사 염화실 주변에 승가대학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사적분과 제9차 회의('14.08.13) 시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를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보은 법주사(사적 제503호)
-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21번지
- (3) 신청내용<법주사 승가대학 도서관 신축>
 - ㅇ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사면 사내리 209 등(문화재구역 내)
 - ㅇ 사업내용

구	구 분 당 초('14.08.13)/부결		변 경	비고
건축면적 195.30 m²		195.30 m²	84.87 m²	110.43m² 감
규	모	지상1층(전면7칸, 측면3칸)	지상1층(전면5칸, 측면3칸)	
구	조	한옥(겹처마, 팔작지붕)	한옥(겹처마, 팔작지붕)	
위	치	대웅보전 뒤	염화실 옆	

※ 기존 건물 : 정재당 뒤 하천변, 252.51 m², 샌드위치판넬조

라. 참고사항

- (1) 당초 신청 시 현지조사 의견('14.07.29/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 정재당 뒤 하천변에 조립식 형태의 승가대학 도서관이 노후됨에 따라 대웅보전 뒤에 전면 7칸, 측면 3칸의 한식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계획된 위치와 규모는 대웅보전과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주변 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신축은 법주사 종합정비계획(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주사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와 연계하여 조립식 가건물은 철거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8. 고령 주산성 주변 고령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주변에 고령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주산성 주변의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 청사를 고령통합학교 신축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주산성(사적 제61호)
-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 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고령교육지원청사 신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106-1 외 1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5m 이격/5구역(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203.00 m²(2,481평)
 - 건축면적 / 연면적
 - ·청사동: 1,237.44m²(374평) / 2,854.81m²(864평)
 - · 창고동 : 69.00m²(21평) / 69.00m²(21평)
 - 규모 및 구조
 - •청사동: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 창고동: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ㅇ 부결
-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검토

19. 상주 복룡동 유적 내 어린이대피소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내에 어린이 대피소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상주시가 조성 중인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녹색 쉼터)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간이 어린이대피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 회의에 부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 하기로 보류되어 현지조사 후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 ㅇ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3 일원
- (3) 신청내용<어린이대피소 설치>
 - ㅇ 사업내용
 - 구조 및 규모 : 경량목구조, 1층
 - 건축면적/최고높이 : 38.57㎡/3.15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2.02/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ㅇ 대피소 설치는 '어린이 테마숲 공원'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ㅇ 대피소 설치의 위치와 규모는 규정에 의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단, 현재의 사업명 '어린이 테마숲 공원'은 복룡동의 유적의 역사성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복룡동 유적의 발굴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음(향후 사업으로 권고함)

- 아 따라서 향후 사업을 통해 복룡동 유적의 역사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 사업의 명칭 '어린이 테마숲 공원'은 복룡동 유적의 성격을 알릴 수 있도록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디자인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 재설계할 것
- 복룡동 유적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

20. 진도 용장성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용장성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업내용이 동일한 안건이 2014년도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14.3.27) 심의 시 원안가결되었으나 허가 통보 전 신청인(김ㅇㅇ)이 취하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ㅇㅇ 외 39인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
-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번지 외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676-3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81m 이격)
 - ㅇ 내용
 - 부지면적 : 78.410m²(23.700평)
 - 모듈배치방식: 가변고정식(기울기 15°~45°)
 - · 모듈 최고 높이 : 2.47m(성토높이 포함)
 - · 모듈사이즈 : 가로 6m × 세로 3m × 2ea
 - 마을과 인접한 부분(2.130평) 완충공간 조성 및 조경 식재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
 - ㅇ '14.03.25/문화재위원 ㅇㅇㅇ(김ㅇㅇ 신청 시 현지조사)
 - 신청부지는 용장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1m 이격되어 있으며 과거

양식장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불용지임. 태양광 발전시설은 방파제와 도로면보다 낮은 위치에 계획됨.

- 본 사업은 버려진 땅을 재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반면 사업부지가 용장성과 거리가 멀지 않아 사적지 경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14.02.24/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김ㅇㅇ 신청 시 현지조사)

- 신청부지는 용장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1m 이격된 위치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방파제와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며, 신청부지는 현재 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신청된 집열판이 방파제와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나, 신청부지는 용장성 문화재구역에서 거리가 멀지 않고 보이는 위치이며, 설치되는 집열판의 규모(면적)가 커서 신청안과 같이 집열판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의견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지역은 진도 용장성과 인접한 곳으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7219(2013.12.2.)호의 공문에서 불허 통지된 곳(676-5 번지)과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문화재청에 진달한 곳(676-3번지, 우리군 관광문화과-4941(2014.4.3.)호의 공문)임. 이미 불허가 났던 곳과 지역주민 민원발생으로 취하된 곳에 금회 신청인만 다르게 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전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
- 또한 우리군에서는 벽파진 복원정비를 통해 이 지역을 역사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려 하고 있음. 신청지역과 인접한 곳에 오류리 수중발굴 지역, 이충 무공 전첩비와 벽파진 터가 있고 그 앞으로 감부도가 있어 이를 활용한 삼별초 공원, 이충무공 전첩비각과 시비 조성, 벽파정 복원과 유배문학관 건립, 벽파와 감부도를 연결하는 보행데크 설치, 나루터 체험장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경우 용장성과 이충무공 전첩비 사이의 역사문화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불허하여 주시기 바람.

(3) 지역주민 의견

ㅇ 본 구역은 삼별초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지역민과 국가가 그 역사적 정신과

지리적 현장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ㅇ 역사. 지리적 의미
- 삼별초군 진도 상륙지점, 삼별초 항쟁 최대 격전지
- 용장성 시적점 삼별초 유적지
- 정유재란 이순신 장군의 전라우수영 진도 벽파진 활동 주 무대(16일 거주)
- 명량대첩 최초 격전지(벽파진)
- 신라통나무배 발굴지점(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관)
- 이순신 장군 대첩비 직접 경관 지역
- 진도 창군역사 이래 진도관문 항구(1206~)
- ㅇ 태양광 건설 반대 이유
- 역사마당(역사현장)에 인공물(태양광) 설치로 문화재 구역 침해
- 문화재 구역 내에서 경관(조망) 혐오시설
- 지역주민 생활환경 생태계 교란 시설물, 지역주민 생활(가옥) 구역에서 30m 인접거리
- 진도역사문화 시설물 및 진도관광문화 수립에 절대적 방해 요인(삼별초 공원, 삼별초 용장산성순례길, 벽파진 기념관, 유배문학관, 진도해저유물 전시관 등)
- 농업, 수산업 등 진도기반시설 반영구적 발전 저해 요인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사업면적을 축소(마을 반대쪽 방향으로 이격 설치)하고, 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것

21. 진도 용장성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용장성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동일 부지에 양식장 조성 허가신청(신청자 : 임ㅇㅇ)한 사안이 2012년도 사적분과 제5차(2012.5.9.), 제8차(2012.8.8.), 제12차(2012.12.12.) 심의 시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백ㅇㅇ 외 4인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
-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번지 외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676-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ㅇ 내용
 - 부지면적 : 8,341 m²(2,500평)
 - 모듈배치방식: 가변고정식(기울기 15°~45°)
 - · 모듈 최고 높이 : 1.97m
 - · 모듈사이즈 : 가로 6m × 세로 3m × 2ea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사업을 시행할 것

22.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사적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읍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행위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1차(2014.10.8.) 심의 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묘역조성 포함)」과의 관련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보류됨.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2차(2014.11.12.)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되어 보류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정읍 황토현 전적(사적 제295호)
- ㅇ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3번지 외
- (3) 신청내용<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조성>
 - ㅇ 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3번지(문화재구역)
 - ㅇ 내용
 - 묘 역 : 0.8×1.8×0.7m(H)
 - 상 석 : 0.6×0.5×0.25m(H)
 - 비문석 : 0.5×0.2×0.7m(H)
 - 묘역 전면부에 답사 및 방문객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
- (4) 경위
 -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 문학부 표본창고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고자 함.

- 당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유골 발견 소식을 접하고 즉각 일본 외무성과 북해도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유골의 국내 봉환을 요구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진이 1996년 2월 일본 북해도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자 유골 확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6년 5월 30일 지도자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고 '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해 3년간 노력하였으나 끝내 확인하지 못함.
- 2002년 유골의 흉상을 제작하여 전주역사박물관 전시하고, 지도자 유골은 항온·항습장치가 설치된 수장고에 임시로 안치함.
- 이후, 유골의 수습지인 전남 진도군, 동학농민군 첫 승전지인 황토현, 동학농민군 김제원평 구미란 전투지 무명농민군 묘역 등에 유골 안장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정읍시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과 구민사 사이 산자락에 영구 안장하기로 협의하고 현상변경허가 신청함.

라. 참고사항

(1)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계획

- 1. 사업목적
 - ㅇ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거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문화, 관광 등 복합적 문화공간을 창출,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국내·외에 선양하며, 낙후된 지역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ㅇ 필요성 및 지원 사유
 - 동학농민혁명정신이 애국·애족정신을 높이고 온 인류가 지향하여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됨과 동시에 민족 대화합과 통일을 기치로 이를 발전시켜 세계 정신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기념 시설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통한 전 세계적인 정신선양 필요.

- ㅇ 기대효과
-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 추모,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정신선양
-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할 수 있는 추모 공간 및 역사교육장의 조성
-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인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 마련
- 2. 사업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하학리 산 1~10) 일원
- 3.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ㅇ 총사업비 : 404억원(국고 383억원, 지방비 21억원 *부지공시가액)
 - ㅇ 사업내용
 - 기념공원조성 기본·실시 설계
 - 추모공간, 묘역, 추모탑, 연구소, 연수시설, 체험관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6,992m²(황토현전적지 164,390m², 기념관 172,602m²)

구분	시설별	규모(m²)
	연구소	244.06
	유물관/체험관	1,111.84
건축공사	유영봉안소	178.90
	연수동	2,060.81
	편의시설	400.00
	합계	3,995.61
	(가칭)동학문	문:66㎡, 담장:약490m
	추모비(기념탑)	기념탑:1개소, 조형물:2개소
	조각공원	7,530.00
	농민광장	37,360.00
	평화의장	19,664.00
	야외캠핑장	8,755.00
フカフカ	동학농민체험시설	6,257.00
조경공사	생태체험장	_
	체험교육 및 재현장	7,500.00
	기존시설 조경 및 정비	50,403.00
	기타바닥 마감	13,185.11
	기타 조경식재	36,427.00
	산책로(W=2m)	6,848m
	묘역	1,650.00

구분	시설별	규모(m²)
	합계	195,579.11
	주차장	24,759.00
	묘역	1,650.00
	조각공원	7,530.00
부지조성 공사	농민광장	37,360.00
	평화의장	19,664.00
	야외캠핑장	8,755.00
	동학농민체험시설	6,257.00
합계		105,975

4. 사업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하여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결과 전라북도(전체 16개 시·도 중 15위)로서 최하위권에 속하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본 사업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고, 낙후도 개선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 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는 전라북도와 경기도, 전남, 서울 및 경상북도 지역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5.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ㅇ 지원근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9조
-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다.
 -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 · 운영
-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 할 수 있다.
- 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ㅇ 추진경위
- 1998년 10월 26일 확정된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미완료 사업으로 종료
-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5년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 2010년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인가
- 2011. 11.~2012. 3, 정읍시 발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수주, 특별법 제8 조에 의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수행
- 2012년 9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②항-7호
- 본 사업은 1998년 10월 26일 확정된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의 연장이며, 그 당시 갖추지 못했던 법적 근거를 완비한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수립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임.

6. 사업추진 절차

- ㅇ 2014년 : 실시설계
- ㅇ 2015년
- 각종 인ㆍ허가 완료. 공사 착공
- 건축공사(연구소, 유물관, 유영 봉안소, 연수동) 착공
 - ·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완료, 골조공사
- 토목·조경: 부지정비 및 터잡기, 우오수공사, 경계석, 측구공사
- ㅇ 2016년
- 건축공사(연구소, 유물관, 유영 봉안소, 연수동 등)
 - · 골조공사 완료, 방수, 조적공사완료
- 전시 : 유물 및 전시물 수집, 소프트웨어(콘텐츠) 개발
- 토목·조경 : 포장공사 완료, 조형물 및 시설물 설치공사

- ㅇ 2017년
- 건축공사(연구소, 유물관, 유영 봉안소, 연수동 등)
- · 공사 완료, 시운전, 준공
- 전시 : 공사완료. 시운전, 준공
- 토목, 조경: 공사완료, 시운전, 준공

(2) 정읍시 의견

○ 기념공원 내 묘역조성은 빨라야 2017년에 완공될 계획이므로 차후 기념공원 내 묘역으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우선 신청지에 안치할 수 있기를 희망함.

마. 의결사항

- ㅇ 부결
- 사적지의 가치를 저해할 우려

23. 여수 석보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여수 석보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정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석보(사적 제523호)
-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전남 여수시 선원동 509-3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
 - 0 내용
 - 면적 : 건축면적 314.10m², 연면적 1.078.14m²
 - 높이 : 13.5m(지하1층, 지상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기타 : 주차 5대. 정화조 20ton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4.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남한산성 보호구역 내 · 외 탐방로 등을 정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문화재위원회 제9차 본위원회('13.07.10.)에서 '우수처리 계획 등 설계 변경 후 문화재청 검토'로 조건부 허가된 것을 보완 제출 받아 허가 ('14.01.06)된 사안으로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제7차 소위원회('14.8.28.) "현지조사 후 재검토", 제9차 소위 원회('14.10.23.) 보류 "보완대책 마련하여 재검토"된 사항을 방부목책 설치 등으로 보완하여 재부의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 (3) 신청내용<탐방로 정비사업>
 -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3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구 분			('14.07.10./	그런기리	n) =
공종	규격	단위	조건부허가)	금회신청	비고
야면석 찰쌓기(콘크리트 뒤채움)	H=0.3~0.9m	m²	228	_	△228
야면석 쌓기(콘크리트기초및천단)	천단H=5cm,기초 H=31.5cm	m	369	_	△369
전석 메쌓기	H=0.9m	m	_	219	219
자연석 쌓 기	H = 0.9m	m	_	23	23
평떼붙임(당초 줄떼심기)	H = 0.7m	m	292	317	
파종(향토종자)	줄파종	m²	844	844	
비탈면 고르기	백호우+인력	m²	722	722	
방부축대목 안전 편책	H=600,L=1,250	경간	25.6	28	2.4
통나무 방부목책	H=1.6~0.8m			75	75
안전 로프휀스 설치	원목,3줄	경간	30	30	
와이어로프 설치	소나무	개소	4	4	
벌근제거	장비+인력	본	1	1	
벤치플륨관 토사 터파기			680m	61.2 m³	
볏짚거적 덮기		m²		104	104

[※] 허가기간 연장 2015.06.30.까지(기허가 2014.12.31.)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11.30/문화재위원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남한산성의 망월사에서 장경사에 이르는 진입로 측면 법면을 석축으로 시공하였으나, 경관에 일부 영향이 있어 이를 일부 재시공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장경사 구간의 9, 10, 11호는 방부목으로 5, 6, 7호지는종자파종·표면 마감을, 4호지 망월사 입구는 종자파종 등으로 재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황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4.09.1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 망월사에서 장경사 구간의 석축 쌓기를 기존의 야면석 찰쌓기에서 전석 메쌓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이며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전통방식의 석축쌓기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기 시행된 공사를 전통방식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현지조사의견('13.07.01/문화재위원 ㅇㅇㅇ)

- 야면석 찰쌓기는 장경사와 망월사로 통하는 도로변의 토사유출 지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토사유출이 심한 동성포루 인접 지역의 곡면 도로는 당초 계획에는 없는 구간이나,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5. 강화산성 내 강화공설운동장 및 문예회관 진입로 포장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내 강화공설운동장 및 문예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내에 강화공설운동장과 문예회관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강화공설운동장 및 문예회관 진입로 포장>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25-4(문화재구역 내)
 -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7,140 m²
 - 신청면적 : 733m²
 - 길 이 : 85.3m , 폭 : 7.8~9.4m
 - 포장재료 : 투수블럭(T=60cm)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26. 부산 금정산성 주변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사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주변 가설건축물 (창고)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 금정산성 주변 가설건축물(창고)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계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 ㅇ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일원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창고) 설치>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2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650 m²
 - 연면적/건축면적 : 98m²/98m²
 - 높이/규모 : 4.2m/7m×14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2.09/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문화재에서 신청지 경계까지의 이격거리는 60.4m이고 신청지 동측 구릉 상부에는 '가나안 수련원'이 위치하고 있음(수련원 내 다수 건축물이 있음)
 - 신청지에는 가설건물 1동(17×1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에 접한 서북측 일부지역은 2구역으로, 신청지와 접해있음
 - 현지조사 결과, 현 가설건물에서 서측으로 5m 이상 이격시키고 문화재와 100m 이격시켜 건축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기존 가설건물은 착공전에 철거하는 편이 바람직함

- 신청건물에 처마가 없으므로 외벽면에서 30cm 이상 처마를 돌출시킨 형태로 변경하고, 지붕과 외벽의 마감색은 주위와 조화되는 색(진갈색)으로 마감할 필요 있음
- ㅇ 그 외 신청지의 지형훼손 및 변형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27.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도로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하남 미사리 유적(사적 제269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57-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35-10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
 - 0 내용
 - 사업면적 21,863.00㎡, L=1,374m, B=12m, 굴착고 3~5m
 - 절토 2,400m³, 성토 660m³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매장법에 따른 조사 및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사업 시행

28.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9차 회의('14.10.23)에서 "부결"후 금번에 재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강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ㅇ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남외동, 동동, 서동 일원
-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 48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02.00 m²
 - 연면적/건축면적 : 212.80 m²/106.71 m²
 - 높이/규모 : 8.5m/ 1동, 지상 3층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0.14/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에서 197m 이격된 곳에 건축면적 115.66㎡, 연면적 346.62㎡, 높이 13.669m,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지 않으나 추정 체성부와 인접하고, 주변이 2~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11m 규모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물산포지로서 시술조사가 선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29.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사업이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임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사적 제396호)
-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단지 조성>
 - 이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681외 6필지(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30m 이격/2구역: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 1층(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 ㅇ 사업내용
 - 지상 2층, 19동, 건축면적 1,127㎡(59.3㎡×19동), 연면적 1,613㎡(84.9㎡×19동)
 - 최고높이 7.2m, 평지붕, 철근콘크리트조, 노출콘크리트·목재사이딩·스타코 마감

라. 의결사항

-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0.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야영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야영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14. 4월 기 허가된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야영장 조성 사업과 관련 하여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이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사적 제396호)
 -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외
- (3) 신청내용<**야영장 조성>**
 -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73(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0m 이격/1구역)
 - ㅇ 사업내용 : 화장실 및 급수시설 추가 설치
 - 화 장 실 : 1동(가로 3m, 세로 2m, 높이 3.9m),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목재 사이딩 마감(벽체), 칼라아스팔트 슁글 마감(지붕)
 - 급수시설 : 싱크대 2기(4m×0.75m×1.05m), 정화조 1톤(1.75m×1.1m×1.3m)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화장실 디자인은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통양식(제주도)으로 설계하고, 사업 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

31. 포천 반월성 주변 유아숲 체험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주변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포천 반월성 주변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포천 반월성(사적 제403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유아숲체험원 조성>
 - 이 위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1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 ㅇ 사업내용
 - 사업부지면적 30,877m²
 - 관리동 127㎡(사무실, 화장실 등), 이동통로 보수 40m(안전휀스, 목재계단 등), 탐험숲 조성 1,360㎡)목재데크, 공작물 공구함 등), 놀이마당 450㎡(대피소, 모래마당, 인지언집), 산책로 보수 80m(목재칩 부설, 목재횡단 배수구, 징검다리 등)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32.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증축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증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85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30m 이격/1구역)
 - ㅇ 사업내용
 - 지상 1층, 연면적 67.46㎡, 최고높이 5m
 - 경사지붕, 오지기와 마감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차폐 수목을 식재할 것

33. 강화 외성 내외 초지리 안방죽 배수갑문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내외 초지리 안방죽 배수갑문 확장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외성 내외에서 초지리 안방죽 배수갑문 확장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초지리 안방죽 배수갑문 확장공사>
 -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3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ㅇ 사업내용
 - 기존 배수갑문 철거 후 확장 신설 : 1개소, 1.8m×1.4m → 3.0m×2.2m, 철근콘크리트
 - 기존 배수암거 철거 후 확장 연결 : L=16m, 1.8m×1.4m → 3.0m×2.2m, 철근콘크리트
 - 기존 날개벽 철거 후 재설치 : 2개소, L=18m(9m×2개소), 철근콘크리트
 - 임시 우회도로 설치 : L=77.7m
 - 굴착면적 : 379m² / 굴착깊이 : 4.9~5.3m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34.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내 홍보관 리모델링 및 진입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내 홍보관 리모델링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내 홍보관 리모델링 및 진입로를 정비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 (3) 신청내용<홍보관 리모델링 및 진입로 정비>
 - 이 위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6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내)
 - ㅇ 사업내용
 - 홍보관 리모델링 200.82m²(1층 홍보관 및 화장실, 2층 전시 및 커뮤니티 장소)
 - 진입로 흙고화 포장(습식) 731㎡, 석축설치 5m 등

라.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35. 연천 전곡리 유적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리개념으로 설정된 현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지형, 건축물 및 고도 현황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ㅇ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등
 - ㅇ 연천 은대리성(사적 제469호)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번지 등
- (3) 신청내용<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ㅇ 당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비고
1구역	ㅇ 신축불가,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공장신축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 공장신축 불가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구분	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미끄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7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	에 따라 처리		
8구역	 건물신축시 사전에 유구확인조사를 실시토록하고, 매장 유구가 확인되면 문화재청 보존조치에 따르도록 함. 			
공통사항	작인되면 문화재정 모근조시에 따므도록 함.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기타 매장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구역은 관련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토록 함 ○ 한탄강관광지 및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업추진시 예외 (문화재청 별도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조정(변경)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안)			비고
ੀ ਦ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41-7-
1구역	0	보존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	용)	
2구역	0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T H	0	기존건물에 한하여 개・보수 허	용하며 공장 등은 신축불가	
3구역	0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97.4	0	기존건물에 한하여 개・보수 허	8	
47.dl	Ó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0	기존건물에 한하여 개・보수 허	8	
5구역	ㅇ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항 포함 ○ 군 계획조례(용도지역·지구 등)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도록 함			

라. 검토의견

- 유적 및 한탄강과 인접한 곳은 개별 심의를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어울리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구역과 일정한 거리가 있고 지형의 단차가 있는 전·답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지형,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ㅇ 개발 우려가 없는 한탄강과 문화재와의 이격 거리가 있고 도로경계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도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통사항에 위험 저장시설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一 七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비꼬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0.0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동심원을 중심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구성된 은대리성과 넓은 유물 산포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연천 전곡리 유적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도심의 특성에 맞추어 은대리성의 북측과 전곡리 유적의 동측 구역일부를 완화 하고자 신청된 건으로서,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환경의 의미에 관해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고저차가 주는 시각적인 경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황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은대리성 남측의 한탄강 건너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12m)은 은대리성의 관방유적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1구역(보존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공통사항으로서 군 계획조례(용도지역・지구 등)변경 시문화재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안대로 시행

36. 연천 호로고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리개념으로 설정된 현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지형, 건축물 및 고도 현황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 (3) 신청내용<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0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0m~50m	○ 1층 이하 최고높이 4m	
2구역	50m~100m	○ 2층 이하 최고높이 7m	
3구역	100m~200m	○ 100m~200m : 3층 이하 최고 높이 10m이내	
4구역	200m~300m) 4층 이하 최고 높이 15m이내	
5구역	300m~500m	○ 300m~400m이내 8층 이하 최고 높이 25이내 ○ 400m~500m이내 10층 이하 최고 높이 30m이내	
		위 항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함	

ㅇ조정(변경) 신청 안

구 분	허용 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ㅇ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군 계획조례(용도지역·지구 등)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도록 함		

라. 검토의견

- 문화재 및 임진강 강변과 인접한 곳은 개별 심의를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과 어울리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구역과 일정한 거리가 있고 지형의 단차가 있는 전·답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지형,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개발 우려가 없는 임진강과 문화재와의 이격 거리가 있고 도로경계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도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통사항에 위험 저장시설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一 七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가 이와 방자치단체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0.0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ㅇ 본 건은 기존 연천 호로고루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문화재 구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설정됨으로서,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황은 0~50m(1구역(1층 규모)),50~100m(2구역(2층 규모), 2-1구역(1층 규모)), 100~200m(3구역(3층 규모),3-1구역(2층 규모)), 200~300m(4구역(4층 규모), 300~500m(5구역, 300~400: 8층 규모, 400~500m: 10층 규모)로 되어 있으나, 주변의 지형과 지목, 건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때, 지정 구역과 연접한 주변의 일정구역, 그리고 임진강과 강건너 임야는 1구역(보존구역), 으로 하고, 1구역 밖의 농경지가 정리된 곳은 2구역(2층 규모), 그 동측으로 더 먼 농경지가 정리된 곳은 3구역(3층 규모)로 하고. 서・북・남측 먼 곳의 도로로 구획된 곳은 4구역(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 적용)으로 한다면, 현재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모순을 극복하면서도 연천 당포성의 역사문화환경을 적절한 보존하는 案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통사항으로서 군 계획조례(용도 지역 · 지구 등)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안으로 시행

37. 연천 당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리개념으로 설정된 현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지형, 건축물 및 고도 현황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당포성(사적 제46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88번지 등

(3) 신청내용<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0 당초

	구분	허가처리 기준	비고
1구역	0m~50m	○ 1층 이하 최고높이 4m	
2구역	50m~100m	○ 2층 이하 최고 높이 7m이내	
3구역	100m~200m	○ 3층 이하 최고 높이 10m이내	
4구역	200m~300m	○ 200m~250m 4층 이하 최고 높이 16m이내 ○ 250m~300m 6층 이하 최고 높이 24m이내	
5구역	300m~500m	○ 300m~400m이내 8층 이하 최고 높이 25m이내 ○ 400m~500m이내 10층 이하 최고 높이 30m이내	
		위 항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함	

○조정(변경)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지구 등)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도록 함		

라. 검토의견

- 유적에서 직접 조망(인접)되는 지역 대해서는 개별 심의를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어울리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구역과 일정한 거리가 있고 지형의 단차가 있는 전·답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지형,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개발 우려가 없는 임진강과 문화재와의 이격 거리가 있고 도로경계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도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통사항에 위험 저장시설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0.0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ㅇ 본 건은 기존 연천 당포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문화재 구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설정됨으로서.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황은 0~50m(1구역(1층 규모)),50~100m(2구역(2층 규모), 2-1구역(1층 규모)), 100~200m(3구역(3층 규모),3-1구역(2층 규모)), 200~300m(4구역(200~250m:4층 규모, 250~300m:6층 규모)), 300~500m(5구역, 300~400: 8층 규모, 400~500m: 10층 규모),특별지구(6구역, 문화재청 사안별 검토)로 되어 있으나, 주변의 지형과 지목, 건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할 때, 지정구역과 연접한 북측과 동북측의 임야로 된 산 3개소, 그리고 임진강, 강건너 임야가 유지되고 있는 구역 일부는 1구역(보존구역), 으로 하고. 당포성 동남측의 연접 구역은 2구역(1층 규모). 그리고 북측의 산으로 된 임야 사이에 조성된 마을은 3구역(2층 규모). 임야로 된 산 구릉 너머와 임진강 건너의 경작지 등은 4구역(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 적용)으로 한다면 현재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모순을 극복하면 서도 연천 당포성의 역사문화환경을 적절한 보존하는 案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통사항으로서 군 계획조례(용도지역·지구 등)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안대로 시행

38.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장흥 석대들 전적(사적 제498호)

ㅇ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외

(3) 신청내용<장흥 석대들 전적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_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5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6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검토의견

-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로서 현재 전시관이 들어서고 주변이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음.
- 작은석대, 큰석대 주변 마을은 사적지 지정 이전부터 조성된 환경이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 경사지붕으로 관리한다면 2층 규모 이하로 허용하여도 사적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 도로변 전답(보존구역)은 도로 건너편 구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조정(2층 규모 허용)
- 장흥실내체육관 주변 식당·민가지역(보존구역)은 바로 연접한 주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조정(2층 규모 허용)
- 작은석대 국도변 방향 농경지(보존구역)는 영농생활 편의를 위해 100m 이격된 시점부터 농가시설 허용(농가시설 1층 규모 허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검토(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_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 최고높이 7.5m 이하 -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11.2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건은 장흥 석대들 전적지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요청된 것으로서, 현재는 작은석대 큰석대를 중심으로 연접 마을은 경사지붕만 허용되는 1층 규모, 그 다음켜의 마을은 경사지붕·평지붕1층 규모이며, 그 외임야나 논밭은 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금회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은 북서측에 연접한 마을은 2층 규모로 하고 남동측의 실제 전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들판은 100m 범위까지는 보존구역, 100~300m 범위까지는 1층 규모의 농가주택, 농가창고만을 허용하는 안으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전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징적인

전적지에 있어서, 지정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조망권 또는 경관은 특별히 고려의 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옛길이 잔존하며, 전시관이 남동측의 들판을 조망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요청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2) 1차 주민의견('14.09.29)

- 석대들 주변 3개 마을은 8m 이하(2층 규모) 허용
- 들녘은 문화재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부터 농가시설 경사지붕 7.5m 허용

(3) 2차 주민의견('14.10.15.)

- o (1안)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m만 남겨두고 사적 해제
- (2안)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국도변쪽(남외 2구방향) 20m는 1구역(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전면 해제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안대로 시행

39.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제안사유

○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10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창녕 교통과 송현동 고분군 등 10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ㅇ 대상 문화재
 -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 석탑,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227호 창녕 인왕사 조성비,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중요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 주민의견 수렴 : 2014.9.22 ~ 10.22(세부의견 별첨)
 - ㅇ 현행 허용기준(2012.3.30 고시)

그ㅂ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0	o 원지형 보존								
2구역	0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0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0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0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0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0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0 0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라. 검토의견

- 창녕 인양사 조성비가 창녕군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1구역 중 일부를 2구역으로 조정하고, 송현동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화왕산 입구는 현재 2~3층 규모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황을 고려하여 창녕군 신청(안)보다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송현동 고분군 주변 화왕산 공원마을지구는 고분군에서 직접 인지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3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11.2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비롯한 창녕 시내의 문화재 7건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이 요청된 건으로서,
- ㅇ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은

지자체의 요청대로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2구역(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이하)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화왕산 입구는 1구역을 연접한 구역과 동일하게 4구역(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4m이하)과 5구역(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 17m이하)으로 조정 요청되었으나 문화재와 가깝고 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2~3층의 현황을 고려하여 3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과 4구역(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4m이하)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화왕산 내부의 공원 구역은 1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요청되었으나, 송현동 고분군에서 인지되고 개발이 허용될 경우 난개발 될 우려가 있어 현황을 유지하고 개별심의를 통해 건축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구역으로 판단됨
- 또한, 공통사항에「전체구역에서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16층으로 완화하는 것이 요청되었으나, 이는 문화재 주변에 고층의 건축물을 제한한다기 보다는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4.11.2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보물 제227호)
- 신청부지에서 기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점과 인양사 조성비에서 공동 주택에 가려 신청부지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안과 같이 완화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직단 전면 부지는 사직단과 고분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보물 제75호)
- 석불의 서쪽 지역은 석불보다 지대가 낮고 공동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화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석불의 동남쪽 지역은 석불이 잘 보이지 않고 기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화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형의 절·성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창녕군 주민의견 수렴결과

(1) 공청회 개최('14.09.22/참석인원 30여명)

- ㅇ 문화재 주변 규제가 너무 강하다. 전반적으로 완화를 요구함
- ㅇ 문화재 보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민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해

적정한 절충안이 필요함

-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주민 의견 수렴도 이해관계인이 모두 참석해서 의견 조율이 될 수 있어야 함
- ㅇ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동쪽 2구역을 3구역으로 완화 요구
- 척경비의 동쪽은 왕복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주변에 2층 이상의 건물이 다수 있어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3구역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봄

(2) 서면제출 의견('14.10.02/장ㅇㅇ)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용안된 공청회 및 조정안을 수정하여 주세요.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해당필지(송현리 81-2, 81-3) 현 1구역을 2구역으로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3) 민원건의 의견('14.10.22/하ㅇㅇ)

- 본인은 군립공원 내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13번지에서 15년차 요식 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던 차 달리 투자를 하여 돌파구를 찾아볼까하고 공원관리부서에 상담하던차 문화재보호법 1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원법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 마저도 불가하는 답변이예요. 이건 아니지요.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네요.
- 상기 주소지 일대는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개발이 되어 공원 주차장 및 근린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와의 거리도 약 400m나 되고 계곡 건너편이라 문화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 공원마을지구로 최소한 공원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만큼은 할 수 있도록 구역 조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 민원인(하ㅇㅇ) 건의사항에 대한 창녕군 의견('14.11.04)

- ㅇ 해당 민원인의 건의를 검토한 바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됨
- 해당 지번은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두 법의 행위제한에 차이가 너무 커 이중규제에 해당하여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있음
- 또한 해당 지번 주변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90년 공원마을지구로 구획되어 공원 주차장과 음식점, 단독주택 등으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임. 특히 화왕산의 주 등산로에 해당하여 그에 다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됨
- ㅇ 해당 지번 주변의 공원마을지구 내는 2011년 1월 5일 창녕읍 내 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당시 2구역(경사지붕 7.5m(1층)이하)으로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3월 30일 사적을 포함하여 창녕읍 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고시하면서 기준이 강화되어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고시됨

- 현행 공원마을지구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높이 3층 이하가 가능 하며, 현재 이곳에는 3층 규모의 음식점이 몇 곳 영업 중에 있음
- 해당 지번 일대는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과 직선 거리상으로는 인접하고 있으나, 창녕천(폭 15m 정도)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공원 내 많은 수목들이 음식점과 주택들의 차페기능을 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이 건의한 바와 같이 해당 지번 주변의 현행 1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가운데 공원마을지구에 해당하는 구역은 3구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안대로 시행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13-040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 3권역에 속하는 23필지 2,929㎡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ㅇ 기존지정 면적 : 1,151필지 354,794.6㎡
- 추가지정 신청면적 : 23필지 2,929㎡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4.12.08)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۱۱۰ ایم	, _n	~) · ·)	-1 T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주 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68-18	대	149	149		
2	"	229-21	대	129	129		
3	"	81-8	대	27	27		
4	"	83-48	대	150	150		
5	"	83-65	대	92	92		
6	"	140-38	대	168	168		
7	"	130-29	대	325	325		
8	"	220-17	대	225	225		
9	"	126-205	대	60	60		
10	"	142-59	대	93	93		
11	"	130-24	전	26	26		
12	"	227-34	대	119	119		
13	"	89-90	대	110	110		
14	"	233-35	대	155	155		
15	"	220-7	대	174	174		
16	"	220-11	대	180	180		
17	"	230-8	대	132	132		
18	"	282-8	대	162	162		
19	"	123-31	대	119	119		
20	"	148-7	대	106	106		
21	"	144-4	대	112	112		
22	"	152-57	대	99	99		
23	"	156-4	전	17	17		
7	합계	1 1		2,929	2,929		

※ I 권역 1필지, Ⅱ-2 1필지, Ⅱ-3권역 6필지, Ⅲ권역 15필지

2.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안)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1호 「사직단」 복원정비를 위한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일제 강점기 당시 훼손, 광복 이후 현대 시설물 잠식 등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사직단에 대하여 민족 자존감 및 사직단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고증 자료 및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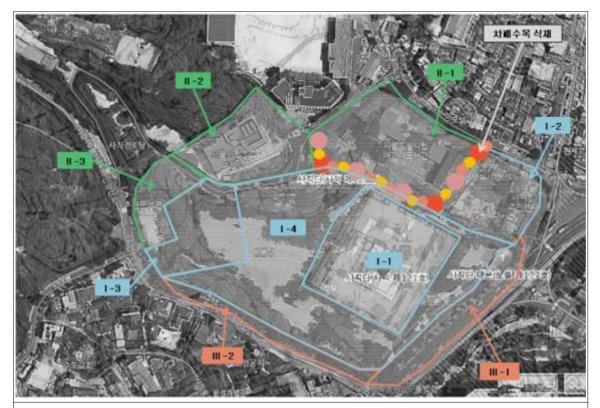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사직단(사적 제121호)
-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1-38
- (3) 신청내용<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안)>
 - ㅇ 사직단 관련 연구성과 분석 자료
 - ㅇ 조선시대 사직단 주요시설 변천 고증자료 내용
 - ㅇ 근대기 사직단 관련시설의 건축특성 분석 내용
 - ㅇ 사직단 일대의 원지형 추정 내용
 - ㅇ 사직대제 조사 및 분석 내용
 - ㅇ 복원정비 영역 설정 타당성 및 설정된 복원영역의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각 영역별 복원정비 계획안 내용 및 세부계획안(복원 계획 건물 및 기존 시설물 정비)
 - ㅇ 사직단 활용 계획안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세부계획은 추가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

- 붙임 1. 사직단 영역별·단계별 시설물 복원정비 계획(안)
 - 2.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 수립 용역 진행 경과
 - 3. 사직단 개요
 - 4. 사직단 주요 연혁 및 세부 추진 경과
 - 5. 주민의 의견서

<붙임 1> 사직단 영역별·단계별 시설물 복원정비 계획(안)



1. 사직단 권역별 복원정비 계획(안)

	단기(3년)		중기(10년)	장기 (미확정)		
구분	2015~2017 3개년	2018~2020 3개년	2021~2024 4개년	2025~2027 3개년	11 영역	표 영역
시·발굴조사	- I-3, I-4 영역	- 1-2 영역	- I-1 영역	(let		• 도로계생 지역
1 영역	I-1 관장 설치(영시구조용)	I-3 (전사장) I-4 (제제동원) 복원·정비 목원·정비 목원·정비		• 어린이도서판 - 종루도서판 - 반 군성전 위치한 기 역(후원명역)	(대운 원위치 영역 +대문 원위치 이 건, 약공청 · 부정 최소 복원, 외장	
Ⅱ영역	- Ⅰ 영역과 Ⅱ영역 사이 차례 수립 식재로 시각적 완충 지다 등 형성하여 사리단 체례 공간과 분리 - Ⅱ영역 모든 시설 공존				후 배통초등학교 보기(비국유기)는 문화재구역 · 보호 구역 - 핵심영역에 태당되기 않고 사	화복 • 서울시 도로 계획파 연계부분 으로 도로 선행 개선이 필요한 기
⊞ લેલ	120	2	(70)	작단 후원영역 복 즉 끝에 위치하여 영역에서 계회	역	
혐의제					프립토관리와 조명 유엔 중화시를 유한 기본 경우	을 위한 합의제 호생 7및 세화기및 문화제일 전문

2. 사직단 권역별·단계별 복원정비 계획(안) 표

<붙임 2>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 수립 용역 진행 경과

- ㅇ '14.03.14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4.04.15 착수보고회 개최(김정배 외 3명/국립고궁박물관)
- '14.07.01 제1차 자문회의 실시(김정배 외 3명/국립고궁박물관)
- '14.10.08 제2차 자문회의 실시(김정배 외 3명/국립고궁박물관)
- '14.10.22 제1차 공청회(국립고궁박물관 강당/약 100명)
- '14.11.14 관계기관 사전 업무협의(서울시교육청, 종로구, 경찰서, 서울시, 종로구 등)
- '14.11.15 사직동 주민 자체 간담회 참석(지역주민,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문화재청 등)
- ㅇ '14.11.17 제3차 자문회의 실시(김정배 외 3명/국립고궁박물관)
- '14.11.26 제2차 공청회(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약 100명)

<붙임 3> 사직단 개요

- ○문화재명: 사직단(사적 제121호/1963.1.21 지정)/관리단체: 문화재청
- ○면 적: 43,587m²(문화재구역 5,973.6m² / 보호구역 37,613.4m²)
- 0 여 혁
-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종묘와 더불어 조선시대 통치와 왕권의 상징적 공간으로 국가존립과 동일시하던 중요한 곳임.

※ 주요 시설

- ㅇ 사직단 : 사단, 직단, 유문, 홍살문, 북신문, 신실, 판위, 신도
- ㅇ 재 실: 전사청, 수복방, 제기고, 악공청 등
- 사직서 : 안향청, 악기고, 동·서월랑 등
- ※ 중요 문화재 현황
 - ㅇ 사직단 대문(보물 제177호/1963.1.21 지정)
 -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2000.10.19 지정)
 -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

<붙임 4> 사직단 주요 연혁 및 세부 추진 경과

□ 조선시대

- ㅇ 사직단 조성(1395/태조 4년)
- ㅇ 주원(周垣) 축장(1414/태종 14년), 사직단에 별도 재실 영조(1416/태종 16년)
- 임진왜란으로 소실(1592/선조 29년)
- 종묘 중건 이전에 복구된 것으로 추정(1596~1603/선조 29년~선조 36년)
- ㅇ 안향청 중건(1701/숙종 27년)

- o 악기고 화재로 소실(1803/순조 3년)
- □ 일제 강점기
 - ㅇ 1912년 토지조사에 따라 사직단 12번지 16,662평이 조선총독부 소유로 등록
 - ㅇ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조성(1922) : 진입도로 개설 및 부속건물 철거
 - ※ 조선총독부는 국가와 왕실에서 신성시 하는 곳을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성성 격하 : 장충단공원(1919), 효창공원 (1924)
 - ㅇ 사직단 북쪽에 경희궁의 황학정 이건(1922)
 - 사직단 북쪽(500평) 매동공립보통학교 이축부지로 분할(1932), 학교건립
 (1933)
 - 사직단 일원(1760평) 고적(57호) 지정(1936)
 - 1937년 공원 배치도에 황학정까지 조성된 산책로와 아동정원, 정자, 변소가 설치되고 사직서 부속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안향청만 남아 사무소로 사용
 - 사직단 정문 보물 제117호 지정(1939)
 - 아동정원과 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아동수영장, 정회사무소, 인보관이 추가 건립(1941)

□ 광복 이후

- ㅇ 아동보건병원 건립(현 어린이도서관, 1956)
-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직단 정문 이전, 14m 뒤로 이건(1962)
- ㅇ 사직터널 개통, 단군성전 신축(1967)
- ㅇ 종로도서관 건립, 사직파라다이스 수영장 개장(1968)
- ㅇ 율곡 이이동상 설치, 사직파출소 건립(1969)
- ㅇ 신사임당 동상 설치(1970)
- 사직로 폭 확장 시 사직단 정문 2차 이전, 10m 뒤로 이건(1973)
- ㅇ 어린이도서관 개관(1979)
- ㅇ 단군성전 개축(1990)
- □ 사직단 보존관리 및 정비 추진
 - 사직단 일원(9,0911 m²) 사적 제121호 지정(1963)
 - ㅇ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985.4. 서울시)
 - ㅇ 사직단과 유원, 유문 및 주원과 주문, 신실 복원(1988)
 - ㅇ 율곡 및 신사임당 동상 서쪽으로 이건(1987), 수영장 철거 추정(1988)
 - ㅇ 사직대제 봉행 시작(1988)
 - 서울사직단복원을 위한 기본정비계획 수립(2008.4, 종로구)

- 전통담장 123m 축조(2010.04.)
- 사직단 유문, 홍살문 보수, 신실 보수, 내부담장 기와 보수(2010.10.)
- 담장복원 95.3m, 보축 97.3m, 정문 단청 및 휀스 설치(2012.05.)
- ㅇ '서울사직단' 이관 주민설명회 개최(2011.12.)
- 관리단체 변경(종로구→문화재청, 2012.01.)
- '사직단' 문화재구역 변경지정 고시(2012.08.)
- 국회 사직단복원촉구 결의 : 결의(2014.4.15), 소위(4.16), 교문위(4.25), 본회의(4.29)
-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수립 용역(2014.3.14.~12.9.,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붙임 5> 주민의 의견서(유ㅇㅇ : 서울시 종로구, 14년 12월 9일 이메일로 제출)

V 2

사직단 복원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

우리는 오늘을 훼손하지 않는 정신회복에 중점을 둔 사직단 복원을 원합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통은 이제야 걸음마 단계입니다.

대규모 복원정비 계획의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예산 통과를 보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직단 복원 계획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첨부. 2〉

여러분께 전달 하고자 하는 주민의견의 핵심을 담은 11월 26일 공청회 시연된 영상자료를 첨부합니다.

재검토 이유 1 . 국회통과는 복원사업계획을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된 사례입니다.

사직단 복원 사업을 통과시킨 국회위원에게 이번 사업에 대해 물었을 때, 초등학교와 도 서관의 철거를 몰랐다고 한다. 겉으로 포장된 명분만을 보고 통과시킨 사례이다. 복원사업 계획 발의안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질의도 없이 통과된 이번 사안에 대해 통과시킨 국회위원 모든 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재검토 이유 2 . 급하게 서두른 보여 주기식 복원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광화문과 숭례문 복원 사례는 외국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끄러운 사례이다. 사직단 복원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재 이루어진 역사와, 고 증의 재검토, 주민과의 대화로 근거를 찾기 힘든 원형 복원이 아닌 대안과 함께 하는 정신을 되살리는 복원이 되어야 한다.

(1) 27년간 목재 복원을 하고 있는 스티베르크 교수는 숭례문 복원이 근 현대 이탈리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정치적 복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탈리아도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이나 피렌체, 베네치아 등의 유력자들은 정권을 잡은 뒤 업적 홍보용으로 문화재 복원 사업을 벌였다. 그는 "문화재 복원을 할 때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정부의 업적 홍보를 위해 섣불리 했다"면서 "숭례문 복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출처: 국민일보 DB 중에서

(2) 2014년 10월 10일 윤관석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실로 얼룩진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사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blog.daum.net/ysj2005/5817

〈첨부, 2〉보도자료_부실로 얼룩진 황룡사 9 충목탑복원

재검토 이유 3 . 성실하지 않은 계획서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예산의 산출근거나 기술에 대한 세부 계획도 없는 단기/ 중기/ 장기 등의 대강의 기간만 표기 되어 있는 계획서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계획마다 예산의 산출근거와 토목건축의 공정인지 등의 기술에 대한 사항을 계획 안에 기술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여 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막대한 금액이 투자될 사직단 복원 계획의 시작을 허술한 예산 계획으로 통과 시켜,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항목이 늘어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형 복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불성실한 예산계획안과 원형복원을 위해 예

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를 대체 할 대안들을 생각하여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핵심이 될 정신 함량을 도모해야 한다.

재검토 이유 4. 시뮬레이션 시험도 없는 발굴, 발굴은 현재의 훼손이다.

- (1) 현재 발굴영역이 너무도 대략적이며 범위가 크다. 이는 정확한 발굴 지점을 찾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시간을 두고 정확한 지표 조사와 발굴 영역을 통해, 발굴 예산을 경제적으로 사용 해야 한다.
- (2) 사직단 복원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어마 어마한 국세가 들어 가게 된다. 이번 복원 사업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과 복원 후, 예상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이로 인해변하게 될 마을의 모습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 (3) 막무가내로 발굴부터 시작하여 현재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고증 자료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시험해 본 후, 복원의 범위를 확인하고 발굴 영역 지점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재검토 이유 5. 정신회복에 중점을 둔 복원이어야 한다.

이번 사직단 원형 복원이 이상적인 계획이라 전제한다면, 현재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 도 철거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고궁 박물관이 세워지고 역사를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써 세운 것은 원형복원만이 그 의의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직단의 정신적 복원도 경복궁의 고궁박물관이나 조선왕릉전시관 등 처럼 전시관을 운영

하여 전체 유추되는 시뮬레이션이나 체험관을 통해 이룰 수 있다.이 경우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주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겠다고 한다면 과거 역사 복원은 미래의 발전 계승을 전제하 여야 한다. 2차 공청회 계획안에 포함된 두 도서관의 철거는 건물이 없던 과거로 돌리는 것이지 진정한 복원의 의미도 역사를 귀중히 여기는 사례도 될 수 없다.

재검토 이유 6 . 사업 계획의 점검을 위해 각 과정별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이 쓸데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사직단 복원이 공존의 역사와 함께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들어가는 시점마다 주민 참여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주인인 국민은 거대한 돈이 들어갈 사직단 복원에 의견 참여를 해야 하며, 실패하지 않는 복원정비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재검토 이유 7. 아픈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시립어린이 도서관은 지켜야 할 기록이자 소중한 역사이다.

(1)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7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지금 현재 이용자 분포는 종로구민은 20% 이며 이외 80%가 서울시 전역에서 오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전 국민의 공감이 필요한 계획이다.
어린이도서관이 사직단 복원을 위해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 근•현대사의 귀중한 역사이다.

서울시립아동병원과 보육시설로써 가혹한 현실에 처한 아이들이 머물렀던 장소이다. 서울시 종로구 사직공원에 있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3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 아 동의 삶에 대해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헐린다는 것은 한국 근•현대의 격변기에 희생된 우리나라 어린이의 사용 중인하는 역사적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며,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하나 줄어드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처한 위기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보여준다.

출처: 이 글은 『012영아보육』, 2014년 5월호에 실린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역사를 아시나요?" 의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재검토 이유 8.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로도서관은 6년만 있으면 100년을 맞이 하게 된다. 이곳은 지켜야 할 소중한 역사이자 근대 역사의 보고이다.

사직단을 지금의 자리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맥락으로 종로도서관 또한 지금 의 자리에서 역사의 가치를 갖는다. 종로도서관의 가치를 무시하고 통합 또는 없애려는 계획은 문화자원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종로도서관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동안 축적되어 온 평생교육의 장이자, 청소년들의 유일한 휴식처이다. 이 뿐 아니라, 근, 현대 고서들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전문적 학술, 사적 자료로서의 고서DB를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결코 가볍지 않은 역할을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수행하는 종로도서관은 각급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의무와 필요성이 막중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적 중요성에 따라 이전자체가 불가하다.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종로도서관. 100년을 전후하여 그 역할은 조명되어야하며, 종로의 자랑, 서울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키워져야한다.

OLASON SANDARA SANDARA

에듀뉴스 - 서울 종로도서관, '보존' 에서 ' 활용' 으로 2014.7.28

참고자료: http://m.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5

<첨부.3_ 보도자료_서울종로도서관>

재검토 이유 9 . 역사로 가치가 있는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종로도서관 과 어린이도서관은 국가가 필요하여 만든 건물이다. 이것을 현재에 와서 불법 건축물로 치부하여 철거를 당연한 진행으로 보는 것은, 근•현대사를 모두 잘못된 것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철거를 타당하다 여긴다면 이승만부터 박정희 시대를 거슬러 올라 모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역사의 흔적 위에 세워진 계동에 있는 현대건물의 사옥도 역사의 복원을 위해서라면 철거 되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주장이 허무맹랑하다 여겨진다면, 사직단 복원을 위해 역사의 가치를 담은 도 서관을 불법건축물로 치부하는 것을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

재검토 이유 10 . 사직단 복원계획은 마을이 중심인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자 하는 '2030년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수립계획' 에 반의 되고 있다.

사직단복원정비계획안에서는 처음부터 학교, 도서관. 주민센타, 치안센타, 놀이터 등의 마을이 이루어지는 기초요소들을 복원을 위해 거리낌없이 없애겠다는 계획내용들을 담겨 있다. 서울시는 2030년 문화도시를 위해 마을이 중심인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정책안으로 서울시 계획을 지지한다.

한쪽에서는 마을을 부흥하여 이것이 문화가 되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마을 을 없애고 건축물을 세워 재현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둘 다 앞으로의 역사를 만 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 없다.

서로 다른 이질적 계획은 이후 문제를 발생한다. 국가사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 어 지길 바라며 2030년 문화도시를 이끌 수 있도록 사직단복원정비계획은 재 검토하길 바란다.

사직단 복원이 국민의 정신을 되살린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없는 사업계획은 관광지 개발 목적 이상이 없다. 그러나 그 목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사람의 역사가 없는 박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골목과 함께 있는 문화재 도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설물과 마을과의 공존을 거부하는 사직단 복원은 관광지로써도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복원하고 유지 보수 할 때 지금과 같은 진행을 자숙하고 국가기관의 본분에 맞게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민의 대안을 소개합니다.〉

대안 1. 사직단 정신 계승을 위한 영상시뮬레이션 장소로 도서관을 이용한다.

장소를 활용하여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된 경복궁의 고궁박물관이나 조선 왕릉전시관 등 좋은 예시가 많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종묘를 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장이 없어 종묘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순전히 해설사의 개인적 소양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이라는 교육적 장소에 '종묘와 사직'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영상관이 생긴다면 '종묘대제와 사직대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건축물만으로는 전달 할 수 없는 사직의 정신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대안 2. 역사의 여러 충을 형성하도록 하여 전체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유도하다.

(1) 종로도서관과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도서관이다. 사직단과 함께 그 자리에서 보존되고 지켜 진다면, 역사의 여러 층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 (2) 거리상 근접해 있다는 장점으로 여러 시대에 걸친 문화 컨텐츠 개발이 풍부해지고, 서로의 가치가 높아 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3)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사직단이 함께 존재하여 역사의 층을 보여주는 값진 문화재로 개발된다면, 도서관과 사직단이 함께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대안 3. 사직단과 어린이 도서관 접점(경계부)에 수목을 조성한 상생의 복원 계획,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1) 도서관과 사직단의 경계선에 차폐목을 조성하는 것은 사직단으로써는 도서관 건물이 보이지 않는 효과를 주고, 도서관에서는 나무 그늘이 풍성하게 만들어져 공간에 대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
- (2) 차폐목을 기준으로 과거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직단과 미래의 정신을 보여주는 도 서관이 한 공간에 조성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흐름을 잘 표현해내는 시대흐름 컨 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 (3) 차폐목의 그늘은 도서관 측면에서는 평상 독서공간, 나무 그늘 독서 공간 등 아이들의 새로운 독서 공간을 조성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대안 4. 사직단의 원형복원은 원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존의 복원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사직단의 원형 복원의 출발점은 배후 녹지조성이다. 사직단 경계부에 배후림 조성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밀식 차폐 식재를 함으로서 충분히 배후림 조성은 가능하다. 또한 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직단 담장의 높이를 낮추면, 사직단 배후림의 엄중함을 부각시킬 수 있다.(1931년 사직단대문사진에 근거한 담장 높이는 지금보다 훨씬 낮다)
- (2) 어린이 도서관 주변은 사직단과 차폐림으로 충분히 분리하여, 시설간 분리 함 으로써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하고, 교육 및 역사적 기능은 상호 교류르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안향청 경역 복원은 사직단 대문을 전면으로 이설하지 않는 한, 원형으로의 복원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어차피 원형 복원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파출소, 동사무소등의 면적이 약 1,000평 정도이므로, 도서관이용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하주차 공간(최소 200~250대 수준 확보가능 할것으로 생각됨)과 지하공간 일부에 파출소 및 동사무소, 사직단 관리사무소등을 조성하여 공존의 방안을 운영한다. 지상부에는 안향청 부대 시설등을 조성한다.
- (3) 사직단 대문을 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직소, 악공청을 원래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금의 대문 부근에 부장직소, 악공청을 조성하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직단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사직제단이다. 사직단 관련모든 시설은 사직단 제사를 위해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필요 시설이므로, 꼭 원

형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부장직소는 책임자의 관리 사무소인 것으로 생각되며 악공청은 종묘 악공청의 사례사진으로도 사직단 대문 부근에 설치하여도 사직단 운영관리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종묘 악공청 사진 >

3. 서울 태릉과 강릉 내 태릉사격장 사용 연장허가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노원구 소재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태릉사격장 사용 연장허가 신청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서울시사격연맹에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위치한 태릉사격장의 연장사용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 이는 단순히 "국유재산 사용허가 문제"가 아닌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조선왕릉(태릉·강릉)의 능제복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사항>

- * 현재 능제복원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약50%정비 완료)중임
- * 동 지역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2015년부터 철거 및 정비를 추진하여 최대한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
- (3) 신청내용
 - ㅇ 허가내용 : 태릉사격장 사용 연장허가
 - 허가기간 : 1년간(2015. 1. 1 ~ 12. 31)
 - * 동 지역에 대한 사용허가는 '09. 8월부터 '14.12.31까지 매 1년 단위로 허가 해온 사항으로 서울시사격연맹은 향후 대체사격장 마련에 필요한 기간까지(2017년) 사용 가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허가대상

	시청면정(;;)		
소재지	지목	· 신청면적(m²)	
	대 지	3,809	3,809
서울시 노원구	건물(50m사격장 지층)	569.70	569.70
공릉2동 26-26	건물(25m사격장 지층)	815.69	815.69
	건물(25m사격장 1층)	1,089.65	1,089.65

- 연장사유 : 현재 대체사격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소속 사격 선수들(학생, 실업, 장애인)의 훈련을 위한 사격장 필요.
- * 서울시에서 2019년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사격연맹은 향후 계속적인 대체사격장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 회와의 협의 추진 중에 있음.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2015년도 사용기간 중 사격장 일부시설 철거 협조
- 2015년도 사용기간 중 구체적인 사격장 이전 계획 및 이전 준비 완료

4. 선농단 제례공간 정비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제463호 「선농단」의 제례공간 정비방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1년부터 광특회계로 추진 중인 '선농단 역사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선농단 제례공간의 고증을 통해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사적분과 제12차 문화재위원회('14.11.12) 검토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선농단(사적 제463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외

(3) 신청내용

ㅇ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외

ㅇ 정비방안

구분	기존		정비(안)							
	月七	1안	2안	3안	비고					
선농단	규모 부적합	규모 축소 (현위치 유지) 하단 석축 노출(2단)	복토된 흙 제거 하단 석축 노출(2단)	복토된 흙 제거 하단 석축 노출(2단)						
유(壝)	전벽돌	석축+사초	석축+사초 내유·외유(양유) 외유 규모 축소	석축+사초 석재로 쌓고 표면에 흙을 덮어 사초 내유·외유(양유) 외유 규모 최대한 확보						
유문	없음	홍살문	홍살문 (유문6개, 정문1개)	홍살문 (유문6개, 정문1개) 동,서유문 통해 외유 진입						
상부석단	석단(1단)	철거	철거	철거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12.0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선농단의 역사유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농단의 단을 정비하고 제례공간 확보와 제례형식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증에 의해 현재의 단은 1960년 위치가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 그리고 지금의 선농단 형태는 선농단 보존회의 활동에 의해 고증없이 정비 되었던 것을 금회 사진과 기록을 통하여 그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의 지정구역이 협소하고 그 북측에 선농단 전시관이 위치함으로서 제례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해 검토한 바, 선농단의 외유, 내유 공간은 고증에 따라 복원적으로 검토하되, 그 중심축을 향나무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까지 향나무쪽으로 가깝게 하여 제례 동선을 확보할 것
 - 또한 북측의 송림 수림은 전시관에 의해 공간이 부족하므로 일부 이격하여 관목류 식재와 혼재하여 화분 등을 통해 차폐수림을 확보할 것

(2) 추진경과

- ㅇ '08.12 :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 선농단의 역사, 변천과정 및 현황 조사, 사업의 추진방향 및 규모 제안
- ㅇ '09.08 :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10.06 : 관계전문가 자문
- 놀이터 부분은 이미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신축 가능
- ㅇ '10.08 : 선농단 주변 시(발굴)조사
- 과거 선농단에 대한 유구,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트렌치 조사결과 선농단 조성시기는 현대로 추정
- ㅇ '11.01 : 선농단 위치 및 형식 고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ㅇ '11.02 : 선농단 조성 설계공모 자문위원회
- ㅇ '11.06 :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정비사업 설계공모
- ㅇ '12.09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선농단 유적지에 맞는 시설 계획 및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
- ㅇ '12.11: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단계별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14.09~12월 : 선농단 제례형식 고증과 복원 및 공간 확보를 위한 학술 연구용역

- 선농제의 원형과 역사적 가치 및 의미 고찰
- 근대 이후 변화된 선농단의 위치 및 단의 배치와 구성 등을 바탕으로 선농단 정비 방안 마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5.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2차(2014.11.12.)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되어 보류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서울 운현궁(사적 제257호)
-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운니동) 외
- (3) 신청내용<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ㅇ 지자체 신청(안)
 - 2008년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이전으로 회복
 - 당초 : 10필지, 21.612m² → 조정 7필지, 9.413m²
 - ㅇ 보존정책과 검토(안)
 - 1948년 구 왕국관리국이 운현궁의 일부를 덕성학원에 매각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게 됨.
 - 지정 당시에는 운현궁 주차장 부지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덕성학원 건물이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08년 일괄조정 시 덕성학원 부지의 담장 안쪽을 전부 추가 지정함.
 - 2008년 추가지정된 구역 중 덕성학원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여도 운현궁 보존관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현궁 복원 권역,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우물 지정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당초 : 10필지, 21,612m² → 조정 9필지, 15,839m²

라. 참고사항

- (1) 1차 현지조사의견('14.09.19/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前 문화재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서울 운현궁의 지정구역 내 현존하고 있는 덕성학원의 주차장,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 등 교육용 건물이 사적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시설의 확충이 불가능 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구역 조정 요청된 것으로서,
 - 2008년 이전에는 현 운현궁 주차장 부지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덕성학원 건물이 제외되어 있던 것으로 2008년 덕성학원 부지의 담장 안쪽을 추가지정함으로써, 현재의 지정구역이 유지되어 왔음.
 - 운현궁은 그 역사성을 회복하고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훨씬 넓은 범위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948년 구 왕국관리국이 운현궁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서, 덕성학원이 현 부지에 자리잡게 된 점, 주변이 고밀도 개발이 되어 있으며 향후 운현궁의 추가적인 복원 계획이 없는 점, 현재 덕성학원이 현 부지에서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운현궁의 보존관리를 위한 운현궁 주차장 부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우물은 지정구역을 유지하되, 덕성학원 건물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이 입지한 곳은 지정구역에서 제외하여도 운현궁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 라고 사료됨.
- (2) 2차 현지조사의견('14.12.01/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본 건은 서울 운현궁의 지정구역 내 현존하고 있는 덕성학원의 주차장,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 등 교육용 건물이 사적지 내에 위치함으로서,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시설의 확충이 불가능 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구역 조정 요청된 것으로서,
 - 2014년11월12일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된 사항임. 이에 따라 2014년12월1일 현지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함.
 - 현 운현궁 지정구역에서 운현궁의 보존관리를 위한 운현궁 주차장 부지,
 양관 출입구, 양관 초소, 우물은 지정구역을 유지하되, 덕성학원 건물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운현초등학교가 입지한 곳은 지정구역에서 제외하여도 운현궁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단, 운현 유치원은 지정구역과 연접하고 별도 공간으로서 분리하기 어려 우므로 지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개별심사를 통해 경관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해제 검토된 구역의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에 있어서, 연접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되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그 발굴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검토안대로 조정

<서울 운현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지정면적 (m²)	소유자	주 소
1	운니동	114-7대	대	13,733	7,965		
2	운니동	114-10대	대	7,102	7,102		
3	운니동	98-32대	대	27	27		
4	운니동	98-50대	대	496	496		
5	운니동	98-52대	대	13	13		
6	운니동	98-71대	대	57	57		
7	운니동	98-72대	대	141	141		
8	운니동	98-73대	대	5	5		
9	운니동	98-86도	도	33	33		
9필지			21,607	15,839			

6.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을 마련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 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 ※ 2014년도 사적분과 제12차(2014.11.12.) 심의 시 명승 지정구역의 확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되어 보류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괴산 송시열 유적(사적 제417호)
 -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화양리) 외
- (3) 신청내용<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ㅇ 지자체 신청(안)
 - 암서재 지정구역이 현황과 맞지 않고 '14.8월 지정된 명승 제110호 화양 구곡의 제4곡 금사담 지정구역과 중복되므로 해제
 - 당초 : 28필지 26,644㎡ → 조정 : 25필지 24,806㎡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	적(m²)	소유자	비고
正世 <i>立/</i> 	그게시	기빈 		(m^2)	당초	조정	2.	
1	화양리	409	대	526	526	0		제외
2	화양리	456	하천	483,704	1,130	750		380m² 감
3	화양리	461	도로	4,760	186	0		제외
4	화양리	산13-11	임야	43,438	746	0		제외
				532,428	2,588	750		

- ㅇ 보존정책과 검토(안)
- 송시열 유적 중 암서재 위치가 당초 지정구역 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금년 8월에 지정된 명승 화양구곡 지정구역에 포함되므로 지자체(안)대로 사적 에서 해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사항

- (1) 천연기념물과 의견('14.12.01)
 - 사적 지정과 명승 지정이 중복되어도 문제가 없으며,「괴산 화양구곡」중 '금사담'은 지정구역을 확대하지 않아도 문화재(암서재) 보존관리에 문제가 없음.
- (2) 자문의견('14.11.10/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 본 건은 괴산 송시열 유적의 암서재 지정구역과 명승의 금사담 지정구역과 일부 겹치며, 사적의 암서재 지정구역 내에 암서재가 잔존하지 않고 명승의 금사담 지정구역 내에 잔존하는 것으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지자체에서 암서재가 지정구역 내에 없으므로 사적의 지정구역을 해재하고, 명승의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 하였음.
 - 아 암서재와 금사담은 화양구곡의 일체회된 공간으로서 명승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암서재가 누각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배후 공간의 일정구간은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암서재 배면 반원 50m 정도 범위까지 명승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0 원안가결

<괴산 송시열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안)>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지정면적 (m²)	소유자	주 소
1	청천리	101-1	도	398	155		
2	청천리	101	대	2,219	1,161		
3	청천리	102	전	2,341	515		
4	청천리	산7-1	임	839,702	10,744		
5	화양리	375-3	사	5,163	5,163		
6	화양리	385-1	도	23	14		
7	화양리	385-2	대	512	32		
8	화양리	386-1	전	289	50		
9	화양리	389-2	대	2,377	37		
10	화양리	391-1	대	251	251		
11	화양리	391-2	도	53	53		
12	화양리	392-2	전	393	38		
13	화양리	393-1	도	235	235		
14	화양리	393-2	전	2,608	2,608		
15	화양리	394-1	대	579	579		
16	화양리	394-2	도	86	86		
17	화양리	395-1	전	698	698		
18	화양리	395-2	도	13	13		
19	화양리	395-3	전	6	6		
20	화양리	396-1	도	22	22		
21	화양리	396	전	378	378		
22	화양리	397-1	도	195	195		
23	화양리	456	천	483,704	750		
24	화양리	466	도	5,220	380		
25	화양리	산14-3	임	7,368,860	643		
	계	25필	지	8,716,325	24,806		

7.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협의 요청(2차)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에 관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협의를 요청(2차) 받았기에 이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협의 요청(2차)에 대해 검토 요청드림
 - ※ 1차 조례 개정(안) 협의('14.5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500→ 100m) ⇒"부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 시·도지사는 <u>지정문화재</u>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문화재(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 (3) 보고내용<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 요청 사유 : 보상 없이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50미터)와 비교, 적용의 형평성 도모
 - 요청 내용: "문화재 유형별 보존지역 범위 설정"
 - 비, 묘, 건조물군(시지정): 100m (단, 강화, 옹진, 도서지역은 200m, 단, 50~200미터에서 10층 이상 건축물 등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
 - 돈대, 산성, 고인돌군(시지정) : 300미터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과 협의

라. 참고사항

- (1)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의견(2014.11.18)
 -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미터 기준의 과다함은 전 국적 현상으로 귀 시의회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 에서 고민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는 본 위원회에서도 공 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중앙기관인 문화재청에서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변경 사항 있을 때까지는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체계와 다른 과격한 조정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강화지역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전 지역이 문화재라 할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강화도 지역에 대한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계획에 대한 귀 시의 정책과 그 방향이 확고히 수립된 이후에 본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는 대폭적인 기준 완화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개발로 한번 훼손· 파괴되면 원상 복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담당부서와 의회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는 누구보다도 조상의 문화와 지역의 전통을 선두에서 지켜주어야 할 시의원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아울러, 아직도 강화지역의 관방유적 등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 지정을 받지 못하여 하루가 달리 훼손·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여 조속히 인천광역시 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개정이 추진될 경우 최소한의 대책을 위해 2014. 11. 1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문화재의 성격ㆍ기능ㆍ지형 등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

별로 조정한다.

- 2) 특히, 강화군의 문화유산 성격상 특별한 보존관리 및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강화군 소재 비지정 관방유적 지정 등)
- 3) 문화재 종류별로 세분하여 기준을 정한다.
 - ① 비・묘・건조물: 100미터 (강화, 옹진 및 도서지역 200미터)
 - ② 돈대·산성·고인돌·포대: 300미터
- 문화유산헌장과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 유념하여 부디 본 조례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및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파괴 되지 않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 의결사항

-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검토는 전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제도 개선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혀 히

제27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① <생략>

- ②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인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 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외곽경계)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 3.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 정 안

제27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① <현 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또한 새롭게 지정되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1. 시지정문화재 중 별표1의 가에 속하는 건조물, 비, 묘, 수목 등의 경우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외곽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의 지역으로 하며, 강화군 및 옹진, 도서지역의 경우 200m 이내 지역. 단, 50~200미터 이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문화재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2. 시지정문화재 중 별표1의 나에 속하는 산성, 돈대, 고인돌군 등의 경우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단위: m)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구분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서울특별시	10		5			
부산광역시	200	500	200	500		
대구광역시	200	500	200	500		
인천광역시	200	500	200	500		
광주광역시	200	500	200	500		
대전광역시	200	500	200	300		
울산광역시	200 500 200 500		200	500		
경기도			200	300		
강원도	200	500	200	300		
충청북도	200	500	300			
충청남도	200	500	200	300		
전라북도	50	0	50	00		
전라남도	200	500	200	300		
경상북도	200	500	200	300		
경상남도	200	500	200	300		
제주도 500			300			

-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상기 범위 外에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관한 단서 규정 존재
 -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200~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충남, 전남** :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00미터까지 지역임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13-047

1. 경주 월성 발굴조사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소재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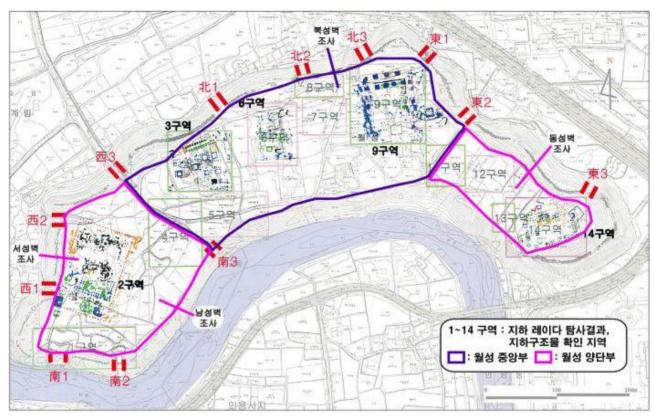
○ 경주 월성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유적발굴조사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 (3) 신청내용
 - ㅇ 경주 월성 내부 및 성벽 조사계획 수립내용. 수목정비계획 검토 등

라. 참고사항

- 경주 월성 종합발굴조사계획 수립 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5.01)
- 신라왕경사업 자문위원회(소위원회) 검토('14.10.15)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심의('14.10.17/원안가결)
- C지구 시굴조사 후 북문지 및 9지역 건물지 발굴전환
- 문화재청 발굴허가('14.10.21)
- 12월 12일 발굴조사 고유제 개최 및 발굴착수



월성 발굴조사 계획도

연도	단계	주요 발굴조사 내용
2014		• 월성 중앙부 시굴조사
2015		• 북문지(정문 추정), 북성벽, 원지, 9구역 건물지(정전, 내전 추정) 발굴조사
2016	1단계	• 동문지, 동성벽(1979년 기조사), 원지, 3구역 건물지 (회랑, 'ㅁ'자형 구조물) 발굴조사
2017		■ 월성 양단부 시굴조사/학술대회 개최 ■ 남문지, 남성벽, 원지, 2구역 건물지(궁장, 대형 건물지) 발굴조사
2018		• 서문지, 서성벽, 14구역 건물지(내전, 침전 추정) 발굴조사
2019		■ 학술대회 개최 ■ 원지, 11·12·13구역 건물지 발굴조사
2020	0-11	■ 원지, 6·7·8구역 건물지 발굴조사
2021] 2단계 -	■ 원지, 1·4·5구역 건물지 발굴조사
2022		• 기타 유구 확인지역 발굴조사
2023		• 학술대회 개최/월성 발굴종합보고서 발간

단계별 조사계획(안)

마. 의결사항

2. 종묘 내 외대문 보수 및 경관 개선사항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내에 외대문 보수 및 수표실, 안내실 초소 교체 설치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나. 제안사유

- 세계유산 종묘 출입문인 외대문의 목부재 및 철물이 노후 및 훼손되어 부분 해체 보수 하여 문의 뒤틀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
- 수표실 및 안내실 초소가 외대문 권역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노후되어 교체 설치하여 외부경관 및 내부환경을 개선하고자함.

- (1) 보고자: 000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 (3) 보고내용<외대문 보수 및 경관 개선>
 -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 ㅇ 보수내용
 - 보 수 명 : 종묘 외대문 보수
 - 보수기간 : 2014년 12월 중
 - 보수주체 :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직영사업단
 - 문 제 점 : 상부 목부재 훼손 이격 현상, 하부 목부재훼손, 감잡이 훼손 3개소
 - 보수내용 : 목부재 교체 및 철물 보강 작업
 - ㅇ 공사내용
 - 공 사 명 : 종묘 수표실 및 안내실 초소 교체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4.12.5. ~ 2014.12.19.
 - 공사내용 : 기존 초소 교체 설치(갈바륨도장, 단열 및 환기 시설 등)
 - 규 격
 - · 수표실 규격(m) : 2.0(세로)*2.0(가로)*2.4(높이)
 - · 안내실 초소 및 수유실 규격(m) : 2.0(세로)*3.0(가로)*2.4(높이)

라. 의결사항

- ㅇ 조건부접수
-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목부재 점검, 수표실, 안내실 디자인 등)

3. 남양주 홍릉과 유릉 재선충 긴급방제사업 시행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재선충 긴급방제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홍유릉의 잣나무림의 재선충병 감염이 확진됨에 따라, 병의 확산방지 및 역사경관림 보호를 위한 간벌 및 훈증, 작업로 신설,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코자 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 홍유릉 문화재구역 내 잣나무조림지(17.25ha)
 - ㅇ 사업내용
 - <'14년 12월 중>
 - 역사경관림 관리를 위한 작업로 신설 250m
 - <'15년 1월~3월 중>
 - 매개충서식지 제거를 위한 쇠약, 열세목 간벌 및 훈증(소나무 외 1종 1,809주)
 - 예방나무주사 실시(소나무 외 1종 3.312주)
 - 임내 고사목 반출 및 파쇄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11.29/문화재위원 ㅇㅇㅇ, 경기산림과학원 ㅇㅇㅇ)
 - ㅇ 긴급방제대상지의 밀생된 임지의 간벌을 통한 수목생육관리가 필요함
 - 벌채원목의 처리방법은 수목을 반출할 수 있는 지역은 반출하여 파쇄시키고,
 수목반출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는 훈증을 통한 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선충이 2007년 남양주시의 천마산에서 발생한 이후로 2013년, 14년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며, 문화재구역(홍유릉, 사릉)쪽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경관림 보호 및 재선충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제법인 수간주사를 적기('15년 1월~2월)에 실시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경과 및 계획

- ㅇ 2014년 12월 중 : 작업로 신설
- 2015년 1월~3월 : 긴급방제사업시행(간벌 및 훈증, 예방주사, 고사목 파쇄 등)

마. 의결사항

4.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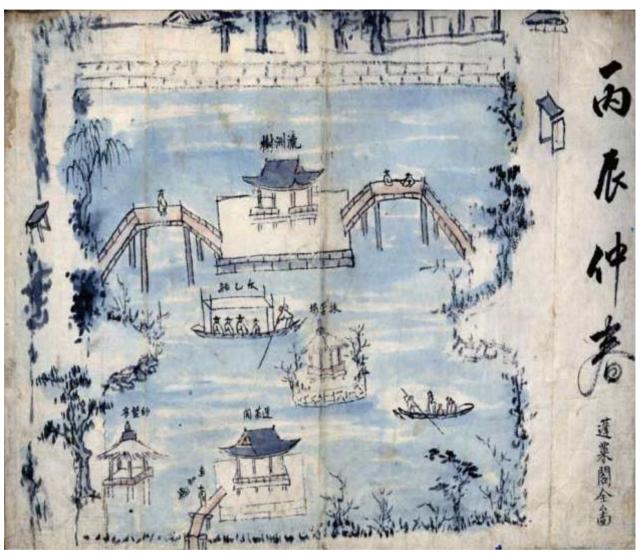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 강원감영 2단계 복원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임
 - ※ '14.4월 사적분과 제5차 회의에서 '복원정비계획 구체화 후 재협의' 하기로 조건부 허가된 사항으로, 원주시에서 복원정비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강원감영(사적 제439호)
- ㅇ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
- (3) 신청내용<2단계 복원정비 공사>
 -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문화재구역 내)
 - ㅇ 사업내용
 - 영주관(관풍각) : 면적 38.88m², 3칸*3칸, 높이 6.74m, 팔작지붕
 - 봉래각 : 면적 19.44m², 3칸*3칸, 높이 5.55m, 팔작지붕
 - 환선정 : 면적 9.72㎡, 사모정, 높이 3.9m, 초가지붕
 - 채약오 : 면적 3.24㎡, 육각정, 높이 4m, 초가지붕
 - 책 방: 면적 9.12m², 2칸*1칸, 높이 4.89m, 맞배지붕
 - 기 타 : 일각문, 한식담장, 연지 등

라. 참고자료

ㅇ 봉래각 전도(1856년)



마. 의결사항 원안접수

5.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0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0차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4.11.27(목) 14:00~17:2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참석위원: 고혜령, 노중국, 손영식, 최성락

ㅇ 회의안건 :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 39건, 보고 1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8건, 조건부가결 18건, 부결 10건, 보류 3건, 원안접수 1건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 창덕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ㅇ 내용 : フ]울시 종로구 원서동 156번지]존 건축물 증축(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조건부가결 - 설계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내 용	
	당초	 ○ 규 모 : 지상2층(3층은 불법 건축물) ○ 높 이 : 5.9m(3층 포함시 8.5m) ○ 건축면적 : 29.69m² ○ 연 면 적 : 51.04m² 	
○ 규 모 : 지상3층 ○ 높 이 : 8.7m 변경 ○ 건축면적 : 29.69㎡ ○ 연 면 적 : 89.07㎡ ○ 2층 이하 벽면 철거 후 재시공			

건 명			내	8				결	과
2. 고양 서삼릉주변 대중골프장중설 (허가사항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37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64m 이격/1,2,3,4구역) ○ 사업내용								후 재검토
변경허가)	7.8	규모(높이) m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골프코스	9홀		9홀		-			
	티하우스	지상1층 (4.5m)		상1층 4.5m)		_			
	조명시설	_		56개 n, 18.3m)	(15.:	56개 2m, 18.3m)			
	안전망	-		213m m, 20m)	(1	213m .0m,20m)			
	7 13		면적(건축연면적) m²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골프코스	83,370		82,972		-398			
	티하우스	105(59.46)	105(54.62)		(-4.84)			
	저류지	12,093		11,883		-210			
3. 김포 장릉 주변 풍무동 단독주택 단지 조성사업	재 O 사업내용 - 건축면적 - 연면적 - 단독주택 구역 13동	[적 : 2,181㎡ : 2,104㎡ ⁻ 택 조성 계획(총 21동 중 현상변경 허가대상 : 1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 ^ㅎ	
	구분 바닥면적 세대수 층수								
			1층						
	162형 162m² 10 1층								
	계	_		13		_			
	- 주요 구조 - 최고 높이		리트						

건 명		결 과					
4. 영주 순흥 어숙 묘 등 주변 왕당	(문.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338-10 외 226필지 (문화재구역 연접/1, 2, 3, 4구역) 					
소하천정비공사	ㅇ 사업내용						
	구분	구분 1차 신청 금회 신청 급회 신청구간					
	축제 절토	23,840 m³	23,840 m³	8,171 m³			
	공 성토	35,702 m³	35,702m³	9,596m³			
	호안공	전석쌓기 19,479㎡	식생바구니 6,868㎡	식생바구니 6,868m²			
	구조 배수통관	11개소	11개소	3개소			
	물공 종배수관	5개소	5개소	1개소			
	교량 PSC교	1개소	1개소				
	공 라멘교	4개소	4개소	1개소			
5.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6. 공주 송산리 고분군 주변 광물자원 탐사 및 발굴 7. 경주 월성 주변	부터 시설 이 신청사유 : 이 사업내용 : 이 - 시설물구조 - 최고높이 : 2 - 시설물규모 : 이 위치 : 충남 350.8 제21: 이 사업내용 - 면적 : 750㎡ - 굴착방법 : 3 - 자업예정기건	호)와는 418.1m (굴착지 130㎡, 여 중장비(포크레인	구역(생활체육/한하며, 별도 심 구대회」를 유치 개최 및 원활헌 강활체육공원 야 요 시설 설치 투광등(원형) 아) 2m), 원형투광등 423번지(문화재 참고 : 공주 고 이격) 약적장 320㎡, 건 굴삭기)	시설 및 부대의)) 지하여 본 대는 경기운영을 구장의 야간 구역으로부터 1마나루(명승	 부결 역사문화환경지역 경관 훼손 우려		
7. 경우 월경 우신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약 2 ○ 사업내용 - 마을 용수로 설치 · 토공 : 흙쌓 순성토운반 · 구조물공 (H=1.1m) 2	00m 이격/1구역 정비공사 : U형 기 45m³, 터파기 38m³ : U형플륨관(0개소, 면벽(H= 형고압블럭 철거	(보존구역)) 플륨관(800×700] 38㎡, 되메우 800×700) L=15 1.2~0.9m) 1.0개	O) L=151.0m -기 30㎡, 51.0m, 면벽 소	-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할 것		

건 명		내	g		결 과
8. 경주 원성왕릉 주변 주차장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 () () () () () () () ()	북 경주시 외동읍 문화재구역으로부 : 연면적 4.05㎡ 100m 설치	○ 부결 - 역사문화환경지역 경관 훼손 우려		
	구 분	허가 사항			
	대지면적/	1,852㎡/ 지상 1층, 1동	좌동		
	높이	7.058m	좌동		
	구조	한식목조, 박공지붕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93.15m²	97.20 m²	증) 4.05m²	
	추가사항	-	한식 담장 설치 (100m)		
	기타	차폐식재 (교목 106그루)	차폐식재 (교목 20그루)		
9. 경주 낭산 일원 주변 건물 증축 및 가설건축물 신축	 사업내용 건물 증축 건축구조 건축규도 109.49㎡ 최고높으 가설건축 건축구조 	: : 시멘트기와 잇 - : 지상 1층, 기준 : 2.5m(기존 건축 물(유리 온실) 신 - : 유리 온실 - : 지상 1층, 연면			
10. 부여 금강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사업내용대지면적건축연면최고높이건축규모	적 : 70.92㎡ : 5.2m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할 것 - 권고사항 : 건물 마감재 변경	

건 명		내	ड			결 과
11. 창덕궁 내 수목 정비공사	/ o 내용 - 기간 / 52,970천 - 공사내용 · 서측외곡 12주 · 인정전	남장 : 가지치기 2∙ 북측 : 위험목 제거 람로 : 가지치기 3주	0	원안가결		
12.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청 공사기간 당초 : 2 사유 : 3 공사변경 전기실 : 5 당초 : 5 	내용 연장 014.12.31 → 변경 : 사고석 담장의 원지 }		0	원안가결	
13. 남양주 순강원 내외 봉영사 진입도로 확장	_핕 o 사업내용 - 연장 : 8(기도 남양주시 진전 1지(문화재보호구역 : 봉영사 진입도로)m, 폭 : 6m, 편입면 50-2번지 소유자 국		l	부결 보호구역 및 역사문 화환경지역 경관 저 해	
14.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수○ 사업내용구 분실부지면적이격거리건축면적건축보이/ 층수절토/성토구조물- 건물구조- 상부계획수목식재	H : 느티나무 10 ³	비 고 감24㎡ 감1.5m 조성 후		조건부가결 마감재질과 색상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건 명	내 용	결 과
15. 서울 운현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8-1,2(문화재보호 로부터 15m 이격/3구역(건축물 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14m이하)) ○ 사업내용	
	구 분 당초 신청 금번 신청 ('14.4.24/부결)	비고
	대지면적 166.44m² 좌동	
	건축면적 104.27m² 좌동	
	연면적 521.35m² 좌동	
	규 모 지상 5층 지상 5층 (최고높이 16.55m) (최고높이 16.05m) 0.	5m 감
	구 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용 도 근린생활시설 좌동	
16. 서산 보원사지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67(문화재토으로부터 400m 이격/2구역(평지붕 5m의사지붕 7m의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61.0㎡ - 건축면적 : 128.90㎡	
	- 연 면 적 : 197.94㎡ - 규 모 : 지상 2층(8.9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다가구주택(6가구)	
17.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농가주택 신축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41(영주 등 신단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8.5m 이격/1 존구역)) 사업내용 구조 및 규모 : 목구조, 1층 건축면적/최고높이 : 87.6㎡ / 4.45m 	
18. 경주 김유신묘 주변 선로 보강공사	 ○ 위치: 경북 경주시 석장동 1211-1, 1211-1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20m 이격/1구구역)) ○ 공사사유: 부흥 D/L의 선로가 유지보수 및 안보가 어려운지역으로 변화되어 전력정화를 위하여 실시 ○ 사업내용: 전주 3기 설치 - 전주: CH 16m, 3기 설치(1구역안), 전체(29기) - 전선: 1.12 C-km - 굴착: 인도측 3.6975㎡ 	정성 확
19. 경주 헌덕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이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108-2번지(문화재구부터 약 250m 이격/1구역(보존구역)) 아 사업내용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잇기 건축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71.46㎡ 최고높이 : 4.70m 	P역으로 O 원안가결

	건 명	내 용	결 과
20.	부안 유천리	ㅇ 위치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81-3 외	ㅇ 조건부가결
	요지 주변	(문화재구역과 연접)	- 시굴조사 선행할 것
	태양광	○ 내용	
	발전시설 설치	- 설치면적 : 8,056m²	
		- 최고높이 : 2.5m	
		- 토사측구 : B=0.8m, L=250m(기존수로에 연결)	
		- 잡석포장 : B=4.0m, L=150m	
21.	경주 읍성 주변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부동 5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ㅇ 원안가결
	다가구주택	약 200m 이격/1구역(보존구역))	
	신축	ㅇ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4층) / 평지붕(3층)	
		- 건축규모 : 지상 4층, 1동, 연면적 483.48㎡	
		- 최고높이 : 14.9m	
22.	완도 묘당도	ㅇ 위치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617 외(문화재구역	· ·
	이충무공 유적	으로부터 180m 이격/1구역)	- 역사문화환경지역
	주변	○ 내용	경관 훼손 우려
	새우양식장	- 새우양식장 : 80m×45m×(지표 위)H1.5m	
	설치	- 저장담수 : 16m×45m×(지표 위)H1.5m	
		- 하우스양식장 : 8m×45m×H4m, 3동, 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23.	파주 덕은리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181-3번지(문화재	_ ' ' _
	주거지와	구역으로부터 40m이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석묘군 주변	이 사업내용	시행할 것
	조림 및 벌채	- 사업 신청면적 52,000㎡(지적면적 75,566㎡)	
		- 조림(식재) : 소나무 1-1묘 9,360주, 자작나무 1-1묘	
		6,240주	
0.4	0.7 20000	- 벌채 : 4,965본(낙엽송 765본, 참나무류 4,200본)	. на
24.	울주 언양읍성	이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63-2 외 1번지	· ·
	주변 아파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V구역 : 7층	
	신축	이하, 높이 22m 이하)	경관 훼손 우려
		이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 708,5㎡/1,392.86㎡	
		/210.82m² 	
		- 높이/규모 : 26.3m/ 1동, 지상 8층	

건 명	내 용	결 과
25. 강화 광성보 등 주변 야영장 조성	○ 위치: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81-6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5,463㎡ - 신청면적: 6,611㎡ - 건물신축: 2동	○ 부결 - 역사문화환경지역 경관 훼손 우려
	용도 구조 건축면적 최고높이 지붕형태	
	1동 샤워장 일반철골조 199.64㎡ 5.21m 경사지붕 2동 소매점 및 사무소 경량철골조 98.4㎡ 4.39m 경사지붕	
	- 차폐 및 방음용 수목식재 : 은행나무(H=5.5m) 72주, 단풍나무(H=2.0m) 7주 - 주차장(21대) 및 야영장(36개소) 조성 - 포장공사 :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1,005㎡, 야영장 내 강자갈 및 혼합석 포장 1,721㎡ - 성토 : 2.0m(야영장 조성 예정지 : 6,611㎡)	
26.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선행할 것
27.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833-3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전통한옥(목구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연면적 146.88㎡ - 최고높이 : 6.98m - 대지면적 : 965.00㎡, 차폐조경식재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시행할 것
28.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833-3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건축구조 : 전통한옥(목구조)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연면적 200.50㎡ 최고높이 : 7.255m 대지면적 : 1,030.00㎡, 차폐조경식재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시행할 것
29.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경북 경주시 남산동 833-3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전통한옥(목구조) -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연면적 200.50㎡ - 최고높이: 7.255m - 대지면적: 1,060.00㎡, 차폐조경식재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시행할 것

	건 명	내 용	결 과
30.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833-3외 2필지(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전통한옥(목구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도 여명전 02.25㎡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시행할 것
31.	병영성 주변 다	-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연면적 92.25㎡ - 최고높이: 6.6m - 대지면적: 800㎡, 차폐조경식재 ○ 위치: 울산시 중구 동동 82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112.00㎡/231.44㎡ /73.18㎡ - 높이/규모: 12.1m/ 1동, 지상 4층	 시굴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 또는 3층 이하로 건축할
32.	병영성 주변 다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470-2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5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 193.00㎡/346.62㎡ /115.66㎡ - 높이/규모 : 10.75m/ 1동, 지상 4층	- 시굴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33.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공장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432번길 외(문 화재구역으로부터 413m 이격)	ㅇ 원안가결
34.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농로 조성공사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143-2번지 등 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로 개설 : L=135m, B=3.0m - 토 공 : 터파기 101㎡, 잔토처리 101㎡ - 포 장 공 : 콘크리트 포장 405㎡(T=15cm) - 부대공사 : 조경석 쌓기 L=24m, H=60cm	
35.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동 92번지 1호(문화 재구역으로부터 32m 이격/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560㎡ - 건축면적 93.56㎡ - 건축규모 : 지상1층 - 높이 5.3m - 지붕 : 콘크리트 슬라브 - 정화조 : 단독정화조 ○ 사업기간 : 착수 후 1년간 ○ 사업비용 : 140백만원 	○ 조건부가결 - 부지 전체 면적에 대한 시굴조사 후 재검토

	건 명	내 용						결 과
36.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다가구주택 등 신축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69번지 외 1필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1구역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 1층(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사업내용 						
		A동 2층 1	연면적 198.17m² 40.6m² 40.6m²	최고높이 7.9m 4.88m 4.88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37.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호구역으로 농가창고 1층, 최고	: 농가주택 7.5m))	l	보류 기 건축허가 된 단독주택 건과 추후에 연계하여 재검토		
38.	강화 외성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사업내용컨테이너	·역과 연주 : 1동(3m	년지(문화재	l	부결 역사문화환경지역 경관 훼손 우려		
39.	창녕 교동과 송 현동 고분군 주 변 창녕박물관 인접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 최고높이 : 3.2m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97-2번지(문화재구역 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보행자 안전휀스 : L=349m, H=1.0m(굴착깊이 0.25m) - 기존 점멸등(높이 10m, 폭 8m) 철거 후 신호등설치(총 5기) ※ 신설 신호등 수량 및 규격 : 보행등 2기, H=4m / 차량등 3기, H=10m / 기초부 굴착깊이 1.88m, 폭 1.8m - 횡단보도 신설 : 1개소(폭 6m) - 신호등 제어함(1개소) 및 맨홀(2개소) 설치 - 전력선 인입 : L=50m, 굴착깊이 30~50cm, 폭 30cm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할 것

건	명		내 용	결	과
. 사직 통사고	난 대문 ! 피해혁	년황 C 보	 의치: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내용 사고 발생일: '14.11.20.(목) 21:25분 사고차량: 원인제공 및 대문추돌(아반떼), 황철나무 경계석 추돌(라비타) 사고경위: 경복궁방향에서 사직터널로 진행 중 사직대 문 주변 커브구간 방향전환 시 운전미숙으로 라비타를 추돌하고 사직단 대문 하부 심방목, 기둥, 문설주 등에 부딪힘. 피해현황 기둥 하부 1개소(380×70×195mm×0.25), 어칸 좌측 심방목 1개소(85×65×25mm×0.25), 좌측협칸 우측 문설주 2개소(340×63×120mm×0.25, 195×25×30mm×0.25) 등 일부 경미한 깨짐 발생 사직단 대문 전면 보호책(인제책) 일부 파손(3m) 초소 앞 황칠나무 경계석(420×350×1,000mm) 위치 1개 	원 ○ 원안접수	7
			부딪힘 피해현황 · 기둥 하부 1개소(380×70×195mm×0.25), 어칸 좌측 심방목 1개소(85×65×25mm×0.25), 좌측협칸 우측 문설주 2개소(340×63×120mm×0.25, 195×25×30mm×0.25) 등 일부 경미한 깨짐 발생 · 사직단 대문 전면 보호책(인제책) 일부 파손(3m)		

라. 의결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조ㅇㅇ	<참나무 벌채> ○ 위치: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산6(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9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3.75ha - 벌채 · 표고버섯 생산용 참나무 48% 간벌 · 소나무 등 기타 수종 잔존, 군락벌채 배제 - 운재로 · 길이: 0.34km · 땅고르기 1,020㎡, 사면다짐 680㎡, 횡단배수로 4개소	허가	′14.12.04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전북 부안군	000	 <발굴조사> ○ 위치: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290-1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조사목적: 청자가마터 추정지 조사 - 조사면적: 700㎡ - 조사기간: '14.12월 ~ '15.2월 · 현장조사: 20일 · 보고서 정리: 30일 	허가	′14.11.17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충남 아산시	하ㅇㅇ	< 지하수 관정개발> 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6-4 내용 규모: 150mm, 깊이 80m 취수계획량: 10㎡/일 	허가	′14.12.0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000	<배수로 정비> 이 위치: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5m 이격) 이 사업내용 - 석축쌓기(h=1m): 234m - ሀ형 플륨관(0.8*0.8m/1*1m/1.5*1m): 272m	허가	′14.12.04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000	 <역사공원 및 근린공원 부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 사업내용 - 역사공원 부지조성(절토량:7,300㎡, 성토량:2,500㎡) - 역사공원 부지조성(절토량:3,700㎡, 성토량:0㎡) ○ 변경내용 : 허가기간 변경 - 당초 : 2010.4.29~2014.12.31 - 변경 : 2010.4.29~2016.12.31 	허가	′14.12.01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임ㅇㅇ	<농업용창고 신축>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276-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1구역) 사업내용 농업용창고 연면적 130.4㎡, 최고높이 5.6m 	허가	′14.12.04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고ㅇㅇ	 <근린생활시설 중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241 ○ 내 용 : 허가기간 변경 - 당초 : 허가일~2014.11.30 - 변경 : 허가일~2015.11.30 	허가	′14.11.24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000	 <광케이블 설치>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내용 - 대상: 배관 CD전선관 22mm - 총연장: 약 680m(지상구간 480m, 지중구간 100m, 건물구내 100m) - 구간별 설치: 지중구간(2개소), 배수로구간 	허가	′14.11.19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000	< C C C C C C C C C	허가	′14.12.0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000	<농로 정비> 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115-1 외(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 사업내용 길이: 29m 내용: D1200 흄관 설치, 콘크리트 포장 	허가	′14.11.1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유 ० ०	<지하수 관정개발> ○ 위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03-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8m 이격) ○ 내용 - 사업면적 1㎡, 100m 굴착(지름 150mm 케이싱 설치) - 지상 맨홀 설치(가로*세로*두께= 100cm*100cm*100cm)	허가	′14.11.25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정ㅇㅇ	 <단독주택 신축> ○ 위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8-2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 ○ 사업내용 - 부지면적 800㎡ -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150.35㎡ /129.395㎡, 경사지붕, 최고높이 7.4m 	허가	′14.12.05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울산시 중구	000	<사면 유실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유실사면 정리 및 론생백(식생마대) 쌓기 216㎡ 잡석 뒷채움 및 PVC 파이프 설치 억지말뚝(이형철근 D25mm) 설치 	허가	′13.11.26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북 고창군	୦) ୦ ୦	<토석 채취> ○ 위치: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160-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14,222m² - 절토: 41,754m² - 법면보호공(볏집덮기): 406m² - 토사측구(1m*1m): L=257m - 침사지 (2m2m): 4EA - 세륜장: 1식	허가	′14.12.0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함ㅇㅇ	 <과수원 부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52번지 ○ 사업내용 - 과수원 부지조성 : 유지(저수지)→ 과수원 - 신청면적 : 4,873㎡ - 성토량 : 9,746㎡(성토높이 2.5m, 평균높이 2.0m) 	허가	′14.12.08
사적 제391호 고창 국림리 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000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 ○ 위치: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96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사업내용 - 오수관로: PE관(D200) 320m - 압송관로: 고강도 PVC(D75) 66m - 맨홀형펌프장: 1개소 - 배수설비: 10개소 	허가	′14.11.19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도 제주시	000	 <마을공동시설 중축> ○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241-9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 ○ 사업내용 - (기존) 1층, 높이 4.3m, 면적 196.8㎡,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 (증축 후) 2층, 높이 8.9m, 면적 375. 5㎡,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 허가조건 - 증축부의 외관은 낮은 채도의 색상으로 마감할 것 	조건부 허가	′14.12.02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도 제주시	000	< 배수로 정비> ○ 위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13-22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 사업내용 - 기존 석축 배수로를 콘크리트 배수로 로 교체(L=100m, B=1.5m, H=1m)	허가	′14.12.02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경기도 하남시	000	<경관광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산35번지 등(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사업면적 21,950㎡ - 화장실 1동, 건축면적/연면적 45㎡ /45㎡, 최고높이 4.03m 등 ○ 허가기간 연장: 2016.12.31.까지 (당초~2014.12.31까지.)	허가	′14.11.1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유적	충남 부여군	000	< 관광안내소 지붕개보수 및 주변정비 등> 이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77 (문화재구역) 이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2개동) 지붕 개보수, 주변 정비 등	허가	′14.11.10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경기도 시흥시	000	<자전거 도로 구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22번지 일원(지정구역 내·외)○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개설: L=3.2Km, B=4m○ 기간연장: '16.12.31.까지 (당초 '14.12.31)	허가	′14.12.08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000	 < 보호 경계책 실시> ○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매쉬 경계책, 높이 1.2m, 길이 190m	허가	′14.11.10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전남 여수시	00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 ○ 위치 : 전남 여수시 주삼동 240-3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0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 1층 소매점 341.35㎡, 2층 주택 142.86㎡ - 높이 : 10.8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기타 : 정화조 8톤, 주차장 4대 	허가	′14.11.13

다. 의결사항